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2003. 12

전 병 목 · 원 중 학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조세는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조세로 인해 경제활동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는 이러한 원칙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입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아울러 누진과세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에 차이를 둬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조세이다. 또한 개인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에도 중립적이며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조세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각 개인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세형평성의 문제는 소득세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모두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나라별로 여러 형태로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제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함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와는 달리 과표양성화율이 낮아 개인의 신고소득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

하여 주로 중하위 소득자에게 그 효과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하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일률적 확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의 비중을 증가시켜 넓은 세원 구축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 달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우리나라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세제개편의 주요 대상인 중하위 소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제율 확대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혜택구조는 오히려 면세점 이후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중상위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부담구조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공제제도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한 효율성 분석을 기초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부담구조 분석을 통해 소득수준별 부담구조, 면세점 수준, 가구규모에 대한 고려 등 소득세제 개편의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대비 경제적 편익이 높은 방안들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정책대안들로 인한 재정 부담, 소득세부담의 소득계층별 누진구조, 가구규모별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세부담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세목간의 상대적 역할 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제도 측면에서는 면세점 수준, 누진구조, 가구원 수에 따른 필요경비 고려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소득공제제도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첫째, 저소득층 보호와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근로소득공제의 확대는 1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을 높여 과세기반을 약화시키므로 지양되어야 하며, 둘째 기존 공제제도의 공제율 누진도가 중간소득계층에서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구간 혹은 누진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셋째, 정책목표와의 연관성, 비용대비 편익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보다는 정책목표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구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공제 수준의 현실화와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EITC제도의 도입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전병목 박사와 원종학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원내 세미나 등을 통해 유익한 도움 말씀을 준 서울시립대학 원윤희 교수, 건국대학교 이철인 교수,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준 이은경, 이은정 연구원과 자료와 원고 정리에 도움을 준 신수미, 이현영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가. 요약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함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와는 달리 과표양성화율이 낮고 개인의 신고소득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중하위 소득자에게 그 효과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하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일률적 확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의 비중을 증가시켜 넓은 세원 구축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 달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우리나라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세제개편의 주요 대상인 중하위 소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제율 확대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혜택구조는 오히려 면세점 이후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중상위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심의 근로소득세 제 개편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실제 생활의 기본단위인 가구의 세후소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가구의 생활수준은 소득자 일인의 수입보다 가구원당 수입이 잘 나타나 현재와 현재의 재분배정책은 근로소득자 일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세제측면의 고려가 미약하여 실제 가구의 필요경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기존의 정책들은 가구원당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계층으로 분류할 수 없는 1인 가구 등의 소득세 부담률을 급격히 낮추어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면세자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보고서는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현황과 주요 선진국들과의 부담구조 비교분석을 통해 현 제도를 평가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편방안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목 간의 상대적 역할 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근로소득세 제도측면에서는 면세점 수준, 누진구조, 가구원 수에 따른 필요경비 고려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저생계비와 비교한 면세소득 수준은 1인가구의 경우

2.83배로 4인가구의 1.28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가구규모에 따른 면세소득 수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에서도 1인가구의 면세 소득수준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평균생산직 근로자 소득의 2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나 우리나라는 그 보다 높은 평균소득의 40~50%로 설정되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반면 4인가구의 면세소득은 평균소득의 60~70% 수준으로 미국·영국의 80~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가구규모 증가에 따른 세제적인 고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근로소득세제 개편이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실효평균세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특히 저소득계층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구의 필요경비 측면의 고려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평균세율의 누진구조도 우리나라는 생산근로자 평균임금의 1.3배~2.3배 수준의 중간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공제로 인한 세수결손을 타세금으로 보전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공제의 정부예산 1원당 편익은 1.15원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1.31원보다 낮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예산 1원당 편익은 1.16원으로 두 제도 값 사이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소득공제제도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분석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제시되는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세수중립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공제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 역할을 소폭 변화시킨 시나리오 A(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의 소득수준별 실효세율의 변화는 전액 소득공제되는 소득한도가 줄어들어 따라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은 소폭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45%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의 적용범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연소득 3,000만원 내외의 근로자에게는 제도개편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다. 연소득 3,000만원 이상 수준의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확대효과가 소득공제 축소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게 되며 그 효과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축소된다. 이러한 제도개편의 영향은 연소득 약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실효세율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에 따른 부담구조의 문제점은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은 생산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기존의 40~50% 수준에서 20~30%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져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4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 차이도 현재의 제도보다 넓어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이 현재보다도 낮아져 동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중간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실효세율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제도를 EITC제도로 개편하는 시나리오 B에 따르면 1,5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음(-)의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

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1,600만원을 넘어감에 따라 실효세율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폭은 중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2,177만원~3,000만원계층의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4~6배 이상 증가한 10.0 ~11.4%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1인가구의 높은 면세소득 수준,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세제적 고려 미비, 그리고 중간소득 이상의 계층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실효세율 증가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EITC제도로의 개편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에 대한 면세소득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평균근로자 소득의 20% 이하로 낮아진 반면 4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은 소폭 증가하여 가구규모에 따른 고려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가구원 수 증가에 대한 세제적 고려는 필요경비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일정소득(생산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의 구간에서 크게 나타나며 소득이 동 수준을 초과하면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구규모에 따른 실효세율변화 패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구조로 판단된다. 한편 근로소득세수는 현행 제도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으나 상당한 저소득층 지원금을 고려하면 소득세 부담구조는 중상위근로자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정책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소득층 보호와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

득세액공제의 확대는 1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을 높여 과세기반을 약화시키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두 공제제도의 확대는 넓은 세원을 지향하는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목적인 중하위소득자의 보호측면에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세제 측면의 고려는 현재와 같은 일률적 공제제도 중심의 조세체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등 일률적 공제제도의 축소와 함께 음(-)의 소득세와 같은 적극적인 조세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미 면세 혹은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간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실효세율 증가는 기존 공제제도의 구간 및 공제율의 종합적인 조정 등을 통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제제도의 공제율 누진도가 중간소득계층에서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구간 혹은 누진도를 조정하거나 소득구간의 물가연동제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전체적인 공제제도의 개편방향과 함께 각 공제제도의 역할 정립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대표적인 공제제도 중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소득공제제도보다 비용 대비 편익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제개편시 근로소득공제의 확대를 지양하고 정책목표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구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공제 수준의 현실화와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EITC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9
II.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	23
1.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특징	23
2. 과세체계	27
3. 소득공제	35
4. 세액공제	38
III.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41
1. 미국	41
2. 영국	56
3. 호주	65
4. 독일	68
5. 프랑스	71
6. 일본	74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83
1.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84
2.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99
3.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114
4.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종합적 효과	123

V. 공제제도 개편방안	129
1. 개편방안	129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131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37
참고문헌	141
<부록>	15

표 목 차

<표 II- 1>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24
<표 II- 2> 연도별·세목별 징수실적	26
<표 II- 3> 개인소득세의 총조세수입 비율	27
<표 II- 4> 근로소득공제액	32
<표 II- 5> 연금소득공제액	35
<표 II- 6> 소득공제 내용	36
<표 II-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 현황	37
<표 II- 8> 세액공제 내용	39
<표 II- 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현황	40
<표 III- 1> 2000년 소득신고 대상자별 의무소득신고 최소총소득 분류	42
<표 III- 2> 일반적인 표준공제액(미국, 2002년 기준)	45
<표 III- 3> EITC 적용자·수급총액	51
<표 III- 4> 소득종류에 따른 세율(영국, 2000~2001년)	57
<표 III- 5> 호주의 소득세율(2000년)	66
<표 III- 6> 독일의 소득세율(2000~2001년)	69
<표 III- 7> 프랑스의 소득세율(2000년 기준)	72
<표 III- 8> 소득세 최저과세점(면세점) 내역 (급여생활자의 경우, 2002년)	76
<표 III- 9> 급여소득공제제도의 개요	79
<표 III-10> 급여소득공제 비율	79
<표 III-11>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비교	81
<표 IV- 1>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84

<표 IV- 2> 주요국의 조세수입 구조(2000년)	85
<표 IV- 3> 소득세 과세인원 및 구조변화	86
<표 IV- 4> 면세 소득수준과 최저생계비와의 관계	87
<표 IV- 5> 일인당 소득세 부담구조	88
<표 IV- 6>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실효평균세율 변화	97
<표 IV- 7>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변천	101
<표 IV- 8>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이외의 조세	105
<표 IV- 9> 과세표준계급별 1인당 과표, 소득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107
<표 IV-10>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자의 가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	109
<표 IV-11>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111
<표 IV-12>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비용과 편익	114
<표 IV-13>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천	116
<표 IV-14> 근로소득공제제도 효과분석을 위한 구간설정	116
<표 IV-15> 근로소득 구간별 1인당 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의 감세혜택	117
<표 IV-16>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자의 가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	120
<표 IV-17>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121
<표 IV-18>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비용과 편익	122
<표 IV-19>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 효과분석을 위한 구간설정	123
<표 IV-20> 근로소득 구간별 1인당 소득 및 감세혜택	125
<표 IV-21>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근로자의 가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	126

<표 IV-22>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126
<표 IV-23>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의 종합적 비용과 편익	127
<표 IV-24> 소득세 부담구조	128
<표 V-1> 정책 시나리오의 구성	131
<표 V-2> 시나리오 A의 소득세 부담변화	132
<표 V-3> EITC제도 도입 시나리오(B)	134
<표 V-4> 시나리오 B의 소득세 부담변화	134
<부표 1> 과세표준계급별 1인당 과표, 소득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145
<부표 2>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	145
<부표 3>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146
<부표 4>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비용과 편익	146
<부표 5>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	146
<부표 6>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147
<부표 7>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비용과 편익	147
<부표 8> 근로소득 구간별 1인당 소득 및 감세혜택	148
<부표 9>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	148
<부표 10>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149
<부표 11>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의 종합적 비용과 편익	149

그 립 목 차

[그림 II- 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28
[그림 II- 2] 근로소득세 결정과정	33
[그림 III- 1] EITC 개념도	49
[그림 III- 2]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52
[그림 III- 3] WFTC 개념도	61
[그림 IV- 1] 소득수준별 소득세율	90
[그림 IV- 2] 소득수준별 실효평균세율(1인 가구)	92
[그림 IV- 3] 소득수준별 실효평균세율(4인 가구)	92
[그림 IV- 4] 소득수준별 실효한계세율(1인 가구)	94
[그림 IV- 5] 소득수준별 실효한계세율(4인 가구)	94
[그림 IV- 6] 가구원수별 실효평균세율 비교(일본)	95
[그림 IV- 7] 가구원수별 실효평균세율 비교(미국)	96
[그림 IV- 8] 가구원수별 실효평균세율 비교(영국)	96
[그림 IV- 9]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100
[그림 IV-10]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인한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에의 영향	103
[그림 IV-1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인한 초과부담의 변화	113
[그림 IV-12] 근로소득공제제도	115
[그림 IV-13] 각 공제제도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125
[그림 V- 1] 시나리오 A의 소득세 부담구조	133
[그림 V- 2] 시나리오 B의 소득세 부담구조	136

I. 서론

소득세는 각 개인의 경제활동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수입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조세이며, 통상 누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에 차이를 둬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조세이다. 또한 개인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에도 중립적이며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세계 각국의 세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단일 세금으로 소득세는 최대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간접세를 선호하는 라틴계 국가에서도 소득세는 중요한 세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세는 전체 세수의 약 25%로 부가가치세·법인세와 함께 중요한 세원으로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함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왔다.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와는 달리 과표양성화율이 낮고 개인의 신고소득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중하위 소득자에게 그 효과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하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일률적 확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의 비중을 증가시켜 넓은 세원 구축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 달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우리나라 세제발전 장기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세제개편의 주요 대상인 중하위 소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제율 확대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혜택구조는 오히려 면세점 이후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중상위 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전영준·김재진(2001)).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심의 근로소득세제 개편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실제 생활의 기본단위인 가구의 세후소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가구의 생활수준은 소득자 일인의 수입보다 가구원당 수입이 잘 나타내나 현재의 재분배정책은 근로소득자 일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세제측면의 고려가 미약하여 실제 가구의 필요경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기존의 정책들은 가구원당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계층으로 분류할 수 없는 1인가구 등의 소득세 부담률을 급격히 낮추어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면세자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에 대한 분석과 각종 근로소득공제제도들이 그 도입취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제도운영의 효과분석 측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구조에 대한 분석은 전영준·김재진(2001)이 있으나 정책제안에 대한 효과분석이 없는 단점이 있다.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을 검토한 안중범·송재창(2000), 원윤희(2001)는 저소득근로자들의 노동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EITC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정 및 재분배 효과 등을 제시하였으나 상당한 개선이 요구되는 소득세 부담구조,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세 부

담 등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였다. 그 외 개별적인 근로소득공제제도들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김근중(1997)과 손광락(1999)이 있으나 개별 제도들의 효율성 분석에 그치고 있어 소득세제 개편시 효율성에 근거한 각 공제제도들의 역할정립에 유용한 반면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구조와 부합하는지, 가구 구성원에 따른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김근중(1997)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ITC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손광락(1999)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세율감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 효과까지 감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부담구조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공제제도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한 효율성 분석을 기초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득세 부담구조 분석을 통해 소득수준별 부담구조, 면세점 수준, 가구규모에 대한 고려 등 소득세제 개편의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대비 경제적 편익이 높은 방안들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정책대안들로 인한 재정부담, 소득세부담의 소득계층별 누진구조, 가구규모별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연혁, 현황, 소득공제제도, 근로소득과 관련된 공제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소득공제제도를 살펴보았다. 선진 각국의 소득세체계 및 공제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 및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Ⅳ장에서는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 개편의 시사점을 도

출하고 대표적인 공제제도인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가 개인의 가처분소득, 정부의 예산비용, 종합적인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각 제도의 효율성을 살펴본다. 제V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소득공제 개편방향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전체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

1.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특징

가. 소득세제의 변천

1934년 총독부 내 세제조사위원회의 세제개혁안을 근간으로 도입된 일반소득세가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세이다. 도입 당시에는 제1종 소득세(법인소득), 제2종 소득세(이자·배당 등 원천과세소득) 및 제3종 소득세(제2종세 속하지 않는 개인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의 3종으로 구성되는 분류과세체계 형태였다. 그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직후에 실시된 세제개혁에 따라 제1종 소득세가 부과되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분리하여 법인세제를 신설하는 한편 제2종 및 제3종 소득을 통합하여 일반소득과 특별소득으로 분류하였다.

1954년 종래의 분류소득세제에서 탈피하여 분류소득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소득자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종합과세대상자가 적었을 뿐 아니라 분류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기술상의 어려움 등으로 종합소득체계는 1958년에 폐지되었다. 1961년에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1) 종전의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의 완전한 분류소득세 전환, 2) 신고납부공제제도 채택과 과소신고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제도의 도입, 3) 과세기간의 축소와 중간예납제도 신설, 4) (경제개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와 기계공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이 있었다.

<표 II-0>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연월일	주요내용
1949. 7.15	• 일반소득과 특별소득으로 구분하고 일반소득은 종합과세하고 특별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1954. 3.31	• 분류소득세제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적인 종합과세제 실시
1958.12.29	• 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완전분류과세제로 환원
1961. 8.24	• 자진신고납부공제제도를 신설 • 과소신고 및 무신고가산세제도 신설
1961.12.8	• 경제개발정책의 지원을 위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 도입
1967.11.29	• 일정소득이상자에 대하여 종합과세제 실시 • 지상배당과세제도의 도입
1974.12.24	• 소득의 분류를 전면조정하고 종합과세제로 전환(현행 소득세 체계로 개편) •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8~70% 16단계 초과누진세율)
1978.12.5	• 비과세소득의 범위확대 • 근로소득에 대한 제소득공제 확대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1982.12.21	• 종합소득세율 인하(최고세율 60%→55%)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 •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
1988.12.26	• 종합소득세율체계의 간소화 (16단계→8단계, 최저세율 6%→5%, 최고세율 55%→50%) • 비실명 금융자산 차등세율 폭 확대 • 자동부과율 과세대상 범위 확대
1989.12.30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신설
1990.12.31	• 세율체계 조정(8단계→5단계)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범위 확대
1994.12.22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도입 • 신고납부제 도입 • 종합소득세율 구조개편 및 각종 공제 조정
2000.12.29	•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선 •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출처: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1996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II.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 25

1967년에는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세제유인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1967년의 개정으로 소득세제는 부분적인 종합과세를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분류소득별로 일정액(사업소득 300만원, 부동산소득 150만원, 근로소득 240만원, 배당소득 150만원, 기타소득 100만원) 이상으로서 2개 이상의 분류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경제 규모 확대와 국민소득의 증가, 이에 따른 부의 편재현상이 나타났으나 종래의 부분 종합과세제도로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과세에 한계가 있어 1975년부터 종합소득세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4년에는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1996.1.1 시행) 소득세 확정방식이 종전의 정부부과과세제에서 신고납부세제로 전환되었다. 2000년에는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2002.1.1 시행).

나. 특징

현행 소득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립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¹⁾. 소득을 그 원천 내지는 성질에 따라 11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소득은 그 성질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담세력이 다른 것을 고려한 계산

1) 2002. 1. 1부터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를 도입하였다.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위에서 열거한 11개 항목 가운데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경우 인별로 종합하여 부양부담을 고려한 인적공제를 한 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최저 9%에서 최고 36%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립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를 납세하는 단위는 개인이며,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체 내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현재 약 25% 정도로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II-2> 참조). 하지만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세의 비율이 높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프랑스보다도 그 비중이 낮다(<표 II-3> 참조).

<표 II-1> 연도별·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 세목	1997	1998	1999	2000	2001
내국세 합계	52,153,147	51,237,792	56,393,091	71,106,081	74,027,343
소득세	14,867,893	17,194,021	15,854,601	17,508,873	18,662,954
신고분	5,022,125	4,006,790	3,531,014	4,279,134	5,454,554
원천분	9,845,768	13,187,231	12,323,587	13,229,739	13,208,400
법인세	9,424,669	10,775,797	9,365,392	17,878,435	16,975,149
부가가치세	19,487,991	14,706,805	20,369,037	23,212,042	25,834,726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표 II-3> 개인소득세의 총조세수입 비율

(단위: %)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미국	39.1	37.8	37.7	36.3	40.5	40.7	42.4
호주	44.0	45.2	43.0	40.6	42.6	43.3	36.7
일본	24.3	24.7	26.8	21.4	19.2	18.5	20.6
한국	11.5	13.4	18.5	19.2	18.8	15.6	14.6
프랑스	11.6	11.5	11.8	11.3	17.2	17.4	18.0
독일	29.6	28.7	27.6	27.5	25.0	25.1	25.3
영국	29.4	26.0	27.1	27.1	27.3	28.7	29.2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통계 국제비교』, 2003.

2.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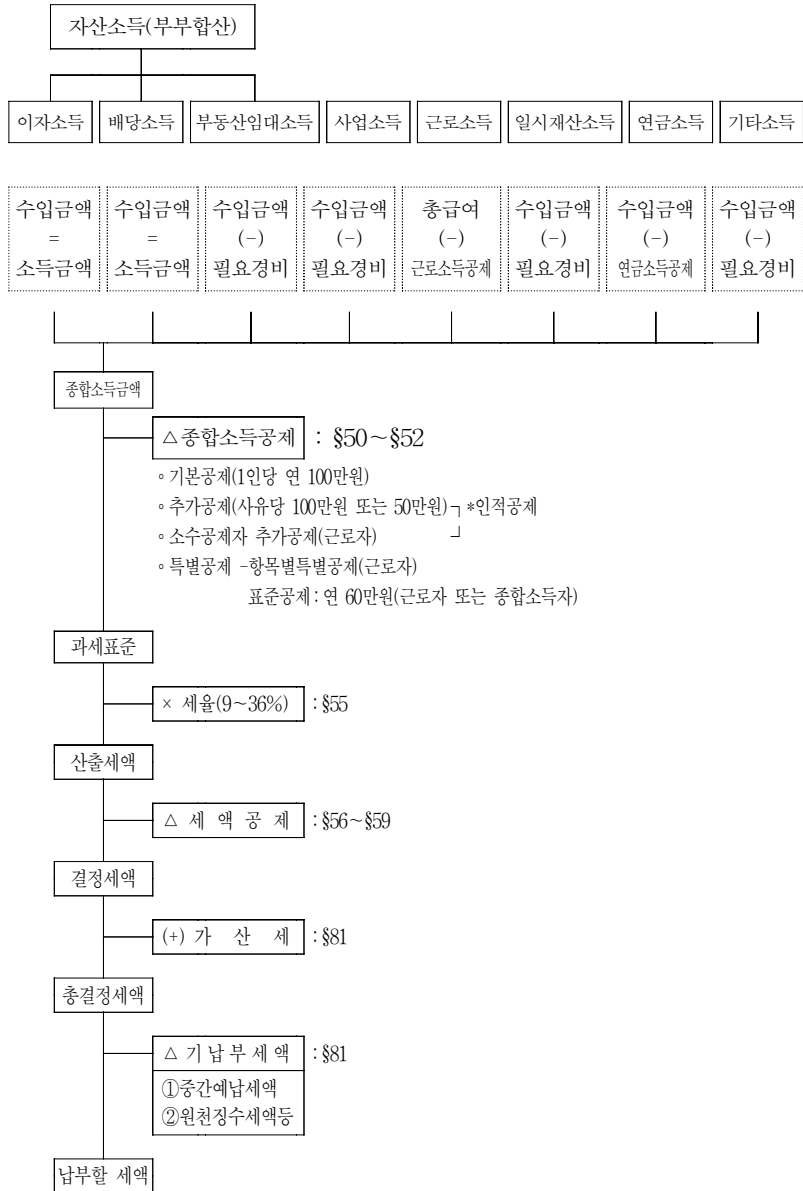
가.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표시하면 [그림 II-1]과 같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8종류가 있다. 종합소득 가운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각각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며, 이 단계의 소득이 소득공제전 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성격상 수입금액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종합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특별공제가 있으며 특별공제에는 항목별특별공제(itemizations)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있다. 표준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60만원이 한도액이다.

[그림 II-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II.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 29

각종 공제를 고려한 과세표준(tax base)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누진적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2003년 현재의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9%, 4천만원 이하 18%, 8천만원 이하 27%,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합하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이 구해진다. 총결정세액에 대해 그해 마지막 급여 등이 지불될 때 연중 급여총액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급여 지불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액 등을 대비하여 과부족액에 대한 정산(연말정산)이 행해져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소득범위, 공제, 비과세·감면 소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4) 내국법인·국외에서 받는 신탁의 이익 5)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8) 비영업대금의 이익 9) 기타 상기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자소득의 세제상의 특징으로는 배당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공익신탁의 이익,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증권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 등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 7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차익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세금우대저축(4천만원 한도, 노인·장애인 등의 경우 6천만원, 20세 미만 1,500만원) 이자 등에 대하여는 10% 저율분리과세하고 있다.

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에는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²⁾ 4) 인정배당³⁾ 5) 내국법으로부터 받은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기타 상기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라.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는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德大)⁴⁾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2) 상법상(형식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3)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배당.

4)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

마.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어업·광업 2) 제조업, 전기·가스·및 수도사업, 건설업 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5)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매매업 6)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단, 사업소득 중 농가부업소득, 비상업적인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창업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지방이전기업·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감면이 있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납세를 위한 사업소득금액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즉, 사업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되나 재무제표 작성과 소득세법이 정하는 소득금액과는 항목에 차이가 있어 이를 조정하여(세무조정)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무조정의 예를 들면,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사업자가 자가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은 손익계산서상에는 수입으로 처리되나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벌금·과료, 가사관련경비, 업무무관경비, 접대비 필요경비 등은 사업소득금액의 비용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

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가리킨다⁵⁾. 근로소득금액은, 먼저 이상의 소득금액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연 240만원 한도)이나 현물식대 또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기자취재수당, 국외근로소득, 벽지수당 등의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이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2003년 현재 공제액은 <표 II-4>와 같다.

<표 II-6> 근로소득공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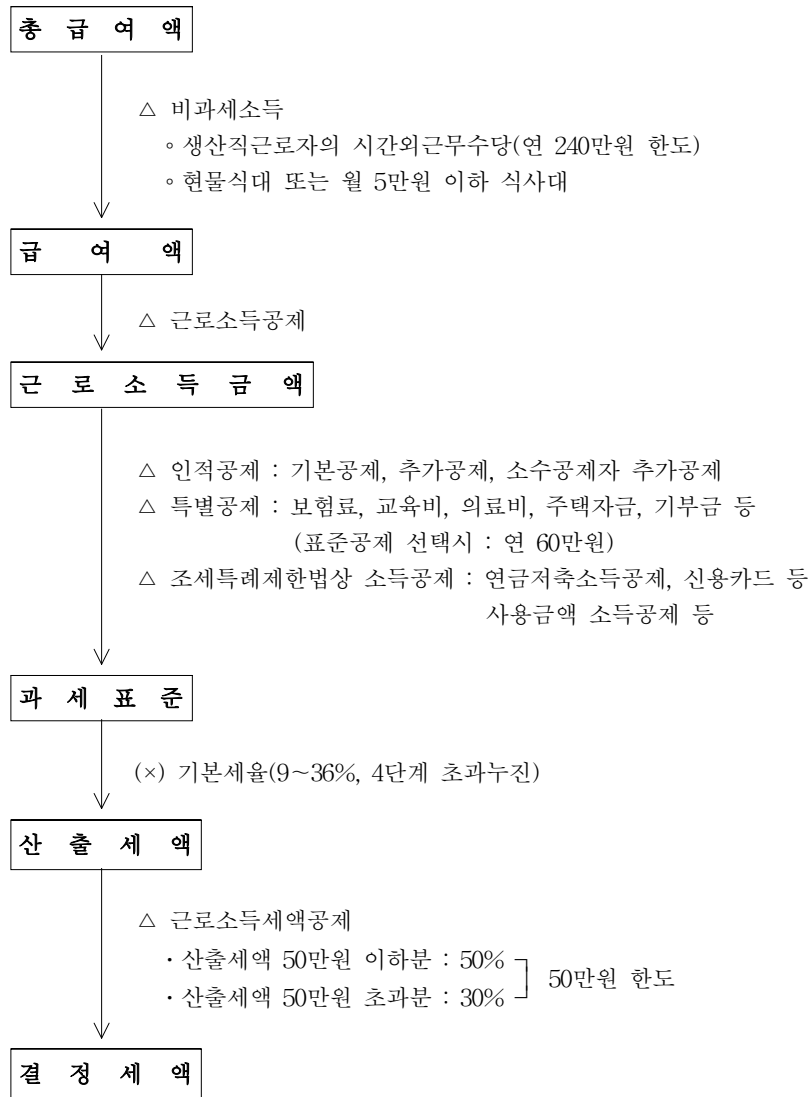
총급여액	공제액
연 500만원까지	전액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50 ⁵⁾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50만원+1,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75만원+3,0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4,500만원 초과분	1,325만원+4,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5

주: 1) 2003년 7월의 소득세법개정으로 종전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됨.

경과조치로 2003년 소득 중 500만~1,5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1000분의 475로 함.

5) 소득세법에는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 2가지로 나누어 정의를 하고 있다. 을종 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그러나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갑종근로소득이므로 이하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사용한다.

[그림 II-2] 근로소득세 결정과정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인적공제로

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있으며,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항목공제가 그 내용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경우 항목별특별공제 대신에 표준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연 6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표준공제와 비교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즉, 특별공제액이 연 6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특별공제를 신청하면 되고, 60만원 이하여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표준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에 더하여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다.

사. 일시재산소득 및 연금소득

일시재산소득으로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200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이 있다.

연금소득으로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이 있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개인연금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소득금액은 지급받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해지는데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II-5> 연금소득공제액

총 연 금 액	공 제 액
연 250만원까지	전액공제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분	430만원+9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아.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1)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3)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4)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5)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6) 사례금·전속계약금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각종 상금·포상금, 직무발령보상금, 기능경기대회 입상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소득공제

제2절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산정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생존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소득공제제도는 초과누진세율구조와 함께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며,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II-6> 소득공제 내용

구분	내용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
	추 가 공 제	○ 사유당 50만원씩 기본공제에 가산(장애인·경로우대공제는 사유당 100만원) - 장애인·경로우대자·부녀자세대주·자녀양육비공제
	소 수 공 제 자 추 가 공 제*	○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 100만원, 당해 거주자포함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
특 별 공 제	보 험 료 공 제*	○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 -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의 료 비 공 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연급여액의 5% 초과분(2003년개정으로 본인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 폐지)
	교 육 비 공 제*	○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 근로자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유치원·영유아는 연 200만원, 초·중·고생은 연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 한도(영유아의 경우 및 취학전아동에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선택)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 연 150만원 정도
	주 택 자 금 공 제*	○ 무주택자·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소유자의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 저축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전액(연 600만원 한도)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 자기명의로 지출한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범위내
	표 준 공 제	○ 연 60만원(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가능,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주 : *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임.

II.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 37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나 사업소득자의 각종 비용 공제와 같이 필요경비 공제적인 것과 인적공제나 특별공제와 같이 필요경비 외에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공제는 크게 생계비 공제의 성격을 가지는 인적공제와 본인 부담이 불가피한 사회보장 지출액의 공제나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 특별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특별공제로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와 같은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가 있다. 각 공제에 대한 내용은 <표 II-6>과 같으며, 2000년과 2001년의 소득공제액을 <표 II-7>에 제시하였다.

<표 II-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0		2001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0,240,923	8,969,168	10,373,693	9,420,062
인적공제계	7,162,284	6,706,644	7,539,627	7,012,397
기본공제	6,220,536	6,220,540	6,448,860	6,448,860
추가공제	871,153	435,572	1,012,354	506,164
소수공제자추가공제	70,595	50,532	78,413	57,373
특별공제	505,015	753,532	436,898	738,001
표준공제	1,926,393	1,155,866	2,135,288	1,281,166
조세특례제한법상소득공제	647,231	353,126	261,880	388,498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표준공제는 납세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정책적 배려에서 세부담을 덜어주되 낮은 관리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려된 것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항목별공제의 합계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항목별 공제에서는 저소득층 납세자보다 고소득층 납세자가 혜택을 더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소득층 납

세자가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⁶⁾.

4. 세액공제

위에서 살펴본 각종 소득공제가 행해진 다음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된 후에 세액공제가 행해진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또는 기납부세액 등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배당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다(<표 II-8>). 세액공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배당세액공제이며,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이다(<표 II-9>). 이 가운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과정을 보면, 연간 45만원을 공제 한도로 하여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로 공제한다⁷⁾. 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공제가 한계세율이 높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6) 소득공제제도의 변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명재·전영준(1998)을 참조하기 바람. 1991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4장의 <표 IV-7> <표 IV-13>에 제시하였다.

7) 2003년 개정으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 대해 45% 세액공제하던 것을 2003년에 대해서는 50%, 2004년 이후에 대해서는 55%로 인상하였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를 종전의 40만원에서 2003년에는 45만원, 2004년 이후에 대해서는 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II.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 39

<표 II-8> 세액공제 내용

구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	$\begin{cases} \text{① 배당소득수입금액} \times 19\% \\ \text{② 한도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배당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end{cases}$ ⇒ ①, ② 중 적은 금액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기장된 종합소득금액(산립소득금액)}}{\text{종합소득 또는 산립소득}} \times 10\%$ • 한도: 10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50%+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한도 : 연간 45만원) (2) 일용근로자의 경우 $[(\text{일 급여액} - \text{일 } 60,000\text{원}) \times 9\%] \times 45\%$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text{※ 재해상실비율} = \frac{\text{상실자산가액}}{\text{상실 전 자산가액(토지 제외)}}$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산립)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 (1) 세액공제방법 세액공제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begin{cases} \text{① 외국납부세액} \\ \text{② 공제한도}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end{cases}$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 동안 이월 공제됨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표 II-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귀속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252,827	260,591	440,177	531,537	591,724
배당세액공제	145,231	161,633	278,396	286,015	332,351
기장세액공제	-	-	27,094	38,353	44,538
근로소득세액공제	55,806	53,930	52,633	96,009	73,958
외국납부세액공제	3,529	4,643	5,004	7,552	11,440
재해손실세액공제	321	432	456	657	1,035
조세특례제한법상의세액공제	42,294	33,536	65,368	84,529	123,720
기타공제	5,646	6,417	11,226	18,422	4,682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1. 미 국

가. 개인소득세 체제

소득신고 의무는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에게 부과된다. 총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현금·상품·재산·서비스 형태로 취득한 모든 소득을 말하며, 미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신고자의 형태는 독신자(미혼자, 이혼자 및 법적 별거자 포함), 기혼자 합산신고, 기혼자 별산신고, 가구주, 부양아동이 있는 미망인의 5가지로 나뉘며, 과세대상 총소득은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결혼 여부와 소득신고 형태, 연령, 총소득의 관계를 고려하여 총소득이 <표 III-1>의 액수보다 많으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소득의 납부세액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소득(gross income) - 총소득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대상항목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 인적공제(exemptions)
⇒ 과세표준(taxable income) × 세율적용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나. 과세대상 총소득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하는 것을 명시화하고 있으

며 총소득의 범위에는 임금 또는 급여 및 기타 소득, 팁(tip)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법인으로부터의 기타 소득, 임대소득, 연금 및 퇴직연금, 사회보장급여 및 철도퇴직수당(equivalent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표 III-1> 2000년 소득신고 대상자별 의무소득신고 최소총소득 분류

(단위: 달러)

결혼 여부	신고자 형태	나이	총소득
독신(이혼 및 법적 별거 포함)	독신	65세 미만	7,200
		65세 이상	8,300
	가구주	65세 미만	9,250
		65세 이상	10,350
아이가 있는 기혼자로서 2000년 후반 6개월 동안 배우자로서 별거한 사람	가구주	65세 미만	9,250
		65세 이상	10,350
기혼자로서 2000년 말 현재(또는 배우자의 사망당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부부합산신고	부부모두 65세 미만	12,950
		부부한쪽 65세 이상	13,800
		부부모두 65세 이상	14,650
	부부별산신고	나이 관계없음	2,800
기혼자로서 2000년 말 현재(또는 배우자의 사망당시) 배우자와 별거하는 사람	부부합산 또는 별산신고	나이 관계없음	2,800
2000년 이전에 미망인이 되고 2000년에 재혼하지 않은 사람	독신	65세 미만	7,200
		65세 이상	8,300
	가구주	65세 미만	9,250
		65세 이상	10,350
	부양아동이 있는 미망인	65세 미만	10,150
		65세 이상	11,000

다. 조정총소득

과세대상 총소득에서 공제대상을 차감하면 조정총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데,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개인연금 납입액

일반적으로 개인이 별도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한 납입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액의 상한선은 2천달러와 총소득 중 작은 것으로 한다. 직장에서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① 기혼자로서 부부합산 신고자 또는 부양아동이 있는 미망인으로서 과세소득이 5만 2천~6만 2천달러인 경우, ② 독신자이거나 가구주로서 조정총소득이 3만 2천~4만 2천달러인 경우, ③ 기혼자로서 부부별산 신고를 하며 과세소득이 0~1만달러인 경우와 같은 소득신고자의 조정총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감소한다.

2) 이사비용

이사의 목적이 직장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 거주지와 새로운 직장간의 거리가 최소한 50마일을 초과하며 새 직장에서 처음 1년 중 최소한 39주(자영업자의 경우 2년 동안 총 78주)를 근무하는 경우 이사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액은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사 기간 동안 소요된 숙박비와 교통비 및 주유비도 포함된다.

3) 이혼별거수당(Alimony)

이혼·별거수당은 이혼 또는 법적인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을 과세대상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외 자발적인 지급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혼·별거수당 수취자는 수취금액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기타 공제 대상

위 공제 대상항목 이외에 다음의 항목 즉,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의료저축 납입금(Contributions to a medical savings

account),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자영업자의 의료보험,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와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및 기타 플랜 불입금, 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 산림 재조성에의 소요비용, 내국세법 501(c)(18)의 연금 납입금, 개인적 자산 임대비용,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개인 또는 특정 예술인의 비용, 추가적인 실업급여를 위한 의무적 재납입금, 해외 주택공제(Foreign housing deduction),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배심원 보수, 환경친화적 차량 관련비용의 일부, 내국세법 403(b)연금 납입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라.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정총소득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공제대상은 표준공제와 항목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 납세자는 둘 중 공제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밖에 인적공제가 있다.

1) 표준공제

납세자가 각종 실제 공제항목을 직접 명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표준공제는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공제액이 더 크다(2001년 현재, 기혼일 경우 900달러, 미혼일 경우 1,100달러를 추가 공제). 그러나 ① 기혼자로서 부부별산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항목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② 회계연도의 변동으로 단기회계연도(short tax year)⁸⁾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 ③ 비영주권자 또는 이중신고형태자(비영주권자와 영주권자 두 가지 모두의 형태로 거주한 자)인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 신고형태에 따른 일반적인 표준공제액은 <표 III-2>와 같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8) 과세대상 소득이 회계연도 전체가 아닌 일부기간에서 발생한 경우, 이 과세연도를 지칭함.

매년 조정된다.

<표 III-2> 일반적인 표준공제액(미국, 2002년 기준)

(단위: 달러)

신고형태	표준공제액
독신자	4,700
부부합산신고자 또는 부양아동이 있는 미망인	7,850
부부별산신고자	3,675
가구주	6,900

2) 항목공제

납세자는 항목공제의 총 공제액이 표준공제액보다 클 때 항목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표준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항목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① 표준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준공제해당액이 제한적인 경우 ② 소득신고 대상연도에 비보험의료비(치과치료비 포함)가 있는 경우 ③ 주택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 ④ 고용주로부터 보상받지 않는 영업활동비가 많거나 기타 공제가 큰 경우 ⑤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⑥ 총 표준공제액보다 총 항목공제액이 큰 경우는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목공제 대상을 한도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한도가 있는 항목공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총소득이 12만 8,950달러(부부별산신고자인 경우 6만 4,475달러)를 초과하면 항목공제액에 한도가 설정된다. 이 경우 총 공제액은 공제한도가 없는 항목의 총 공제금액의 80%를 하한으로 13만 7,300달러(부부별산신고자인 경우 6만 8,6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의 3%만큼 감소한다. 한도가 있는 항목공제의 대상에는 세금·기부금·기타공제가 포함된다. 세금은 주와 지방의 소득세 및 자산세로서 매상세는 제외된다.

한편, 한도가 없는 항목공제의 대상에는 의료비(치과치료비 포함), 투자시 이자비용, 비업무상 상해 및 도난손실, 차량비용 및 피고용자의 업무상 비용, 업무관련 교육비용이 포함된다. 의료비의 경우 조정총소득의 7.5%를 넘는 비용이 인정된다. 투자시 이자비용은 발생한 순수한 투자소득금액만큼 공제 가능하며,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부분을 무기한으로 이월할 수 있다. 비업무상 상해 및 도난손실은 건당 100달러가 넘고 총액이 조정총소득의 10%를 넘어야 인정된다. 피고용자의 업무상 비용, 투자비용, 세무비용, 업무관련 교육비용과 같은 비용은 그 총액이 조정총소득의 2%를 넘는 금액만큼 공제 가능하다. 단, 보상받지 못한 업무상 이동 비용은 예외이며, 이에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외국인인 비영주권자인 경우, 업무상 여행과 관련하여 통근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

실제 항목공제액을 통계이용이 가능한 1998년도의 경우를 들어보면, 3만~4만달러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31%가 항목공제를 신청했는데 그 평균 공제액은 의료비 957달러, 세금 2,690달러, 자선기부금 1,352달러, 이자비용 4,937달러였다.

3) 인적공제

인적공제의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을 포함하고 기혼인 경우는 배우자도 포함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5가지의 검증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고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의 대상이 된 사람은 각자의 소득신고에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인 비영주권자는 본인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캐나다·일본·한국·멕시코 출신은 예외).

2002년 현재, 인적공제 대상자 1인당 3천달러가 공제되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된다. 조정총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소득신고자의 유형에 따라 인적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 조정총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47

하는 2,500달러마다 인적공제 공제액이 2%씩 감소한다. 2001년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공제액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조정총소득 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19만 9,450달러, 부부별산신고자의 경우 9만 6,725달러, 가구주의 경우 16만 6,200달러, 독신자의 경우는 13만 2,950달러이다.

마. 세액계산 및 세액공제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기타 납부대상세액이 있는지를 결정한 후 산출된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자녀공제, 저소득공제, 교육비공제, 노인 및 장애인공제, 기타공제가 있다.

1) 자녀세액공제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각각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현재, 자녀세액공제 최대공제액은 600달러이며, 이 최대공제액은 기혼자의 소득이 11만달러(독신자 또는 가구주는 7만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1천달러당 50달러씩 감소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납세자의 소득세 세액을 넘는 자녀세액공제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02년 현재 7,370달러로 소득의 34%이다. 이 공제액은 소득이 1만 3,250달러(기혼자는 1만 4,520달러)를 넘으면 소득이 2만 9,201달러(기혼자는 3만 201달러)가 될 때까지 감소된다. 공제액이 감소되는 소득의 기준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액은 2002년 현재

1만 350달러로 소득의 40%이다. 이 공제액은 소득이 1만 3,250달러(기혼자는 1만 4,520달러)를 넘으면 소득이 3만 3,178달러(기혼자는 3만 4,178달러)가 될 때까지 감소된다.

2) 저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는 저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액은 2002년 현재 4,910달러로 소득의 7.65%이다. 이 공제액은 소득이 7,150달러를 넘으면 소득이 1만 2,060달러가 될 때까지 감소된다. 그리고 저소득세액공제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납세자만 받을 수 있다.

바. 저소득세액공제⁹⁾(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제도

1) EITC의 개요

미국의 EITC는 저소득층의 사회보장부담 경감을 꾀하는 것과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975년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취로를 조건으로 하는 개인소득세제상의 세액공제조치이며, 미국 내의 빈곤문제 해소를 배경으로 창설된 것이다. 그 후 1986년, 1990년, 1993년에 대폭 확충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된 요건으로는 ①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근로소득이 1만 710달러 미만일 것(자녀가 1명인 경우 2만 8,281달러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3만 2,121달러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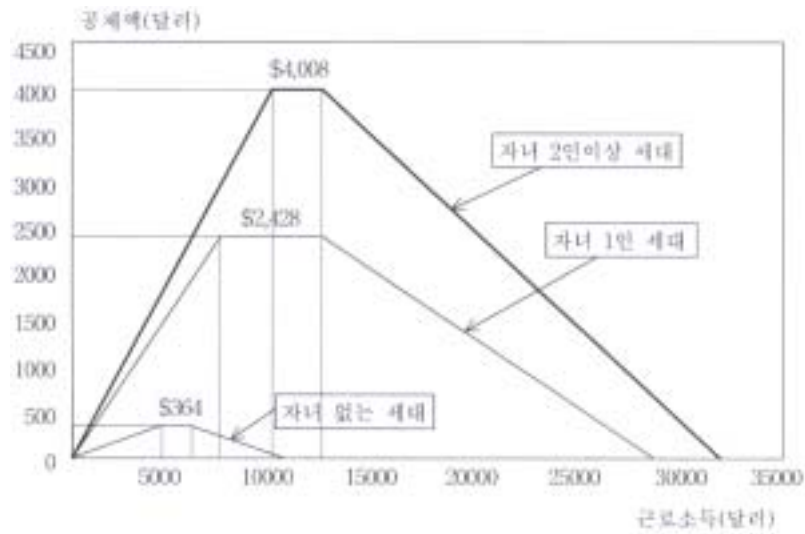
9) EITC를 우리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김근중(1997), 원윤희(2001)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번역하고 있으며, 안중범·송재창(2000)은 ‘저소득세액공제제도’로 번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EITC를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저소득세액공제제도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49

③ 투자 소득이 2,450달러 이하일 것, ④ 미국 시민이며 연간 계속 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지니고 있을 것, ⑥ 부부 개별신고가 아닐 것 등이다.

EITC의 공제액은 ①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도 증가하는 점증(phase-in) 구간, ② 소득이 증가하여도 공제액이 일정한 고원(plateau) 구간, ③ 소득증가에 따라 공제액이 줄어드는 점감(phase-out)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수나 소득액에 따라 변화한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공제액은 증액되거나 적용대상이 되는 자녀는 19세 미만(학생인 경우는 24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자·손자·양자 등의 관계에 한정되며, 또한 이들이 1년의 반 이상을 신청자와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림 III-1] EITC 개념도



출처: Internal Revenue Service 홈페이지에서 작성

2001년의 세대구성 및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보면,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이 1만 20달러까지는 수입이 1달러 상승할

때 40센트 공제액이 증가한다. 최대 공제액은 4,008달러이다. 근로소득이 1만 20~1만 3,090달러인 경우, 공제액은 일률적으로 4,008달러이다. 근로소득이 1만 3,09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체감하여 소득이 3만 2,121달러일 때 공제액은 0이 된다¹⁰⁾([그림 III-1] 참조).

2) EITC의 목적

EITC의 주된 목적은 ①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부담을 경감하여 저소득층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② 취로 인센티브를 촉진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을 해소하는 데 있다.

①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소득층을 한정하여 환급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저소득층에 지원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나 가족구성에 따라 근로세대의 소득이 빈곤선(poverty line)보다 낮은 경우 EITC는 과세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므로 소득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②에 대해서는 근로빈곤계층에 빠지기 쉬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EITC 도입 및 현황

1970년대 경제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저소득층의 실업과 그에 따른 빈곤대책,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 세대의 최저생활보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가운데, 부의 소득세는 여타의 빈곤대책과 통합하여 운용·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10) 미국 연방소득세의 면세점은 2001년 1월 시점에서 독신자가 7,450달러, 자녀가 1명 있는 부부의 경우 1만 9,633달러, 자녀가 2명 있는 부부의 경우는 2만 2,533달러이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다¹¹⁾.

1970년대에 사회보장세(payroll tax)가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오일쇼크 이후 1974년부터 경기후퇴가 시작되게 됨에 따라 부의 소득세 등을 둘러싼 경제학자와 정부관계자 등의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한층 진행된 결과, 최종적으로 1975년에 일에 대한 보너스(work bonus)의 일시적 조치로 EITC가 도입되었다. 그 뒤 EITC에 일정 효과가 있다고 인식됨에 따라 1978년 내국세법에 영구조치로 정착하게 되었다.

EITC의 규모는 1975년 도입시에는 적용자수가 621만 명이었으나, 특히 1988년 이후 급속히 증대하여 2001년에는 적용자수가 1,910만 명으로 소득세 납세 신고자의 15%에 이르고 있으며, 공제총액은 313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급방식에 의해 2001년 환급을 받은 사람은 1,540만 명, 공제액은 262억달러(공제총액의 84%)에 달하고 있다.

<표 III-3> EITC 적용자·수급총액

연 도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EITC 전체								
적용자수(만명)	695	650	1,254	1,933	1,970	1,926	1,930	1,910
공제총액(백만\$)	1,986	2,088	7,542	25,956	31,592	31,901	31,200	31,300
세 환급								
수급자수(만명)	500	474	870	1,518	1,628	1,605	1,560	1,540
공제총액(백만\$)	1,370	1,499	5,266	20,829	27,002	27,604	26,200	26,200

주: 1. Internal Revenue Service 홈페이지로부터 작성.
 2. 2000년, 2001년의 단위는 수급자수 10만 명, 공제총액 1억달러.

11) 뉴저지 주의 4개 도시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아이오와 주, 인디애나 주의 케리, 콜럼비아 주의 덴버,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실시되었다. Atkinson & Stiglitz(1980)는 뉴저지 주의 시행결과를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Atkinson & Stiglitz는 부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노동공급에의 마이너스 영향은 원래 노동공급이 적었던 유배우자 여성 이외에는 작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4) EITC 도입에 따른 경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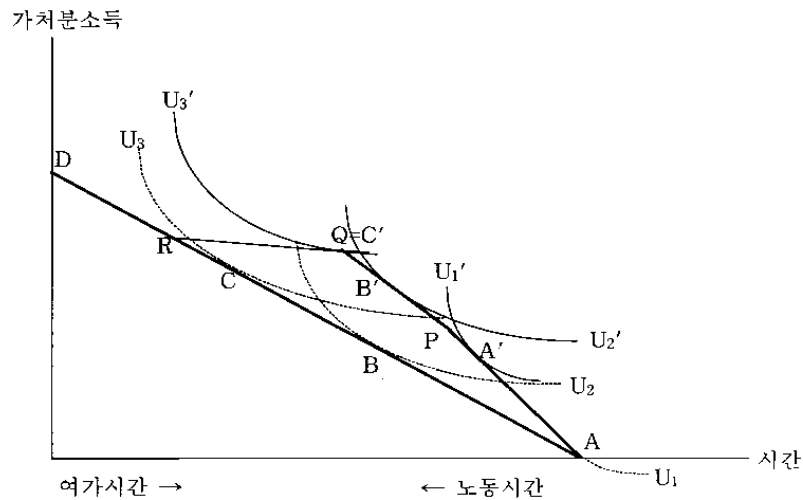
EITC 도입 및 확충효과를 노동공급촉진, 소득재분배, 세무운영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노동공급촉진 효과)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가족구성 등의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혼인 유무, 자녀 유무에 따른 범주(category)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공급도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간 양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EITC가 취업자의 취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는 한편,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를 [그림 III-2]와 같은 간단한 노동-여가 모델을 사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2]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53

그림에서 세로축은 가처분소득, 가로축은 시간이며, A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줄어든다.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은 AD 선을 따라 증가한다. EITC 적용 후의 가처분소득은 선분 APQRD로 변화한다. 개인이 가처분소득과 여가시간을 선택한다고 하면 효용곡선은 U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EITC 도입 전에 취업을 하지 않은(즉, 노동시간이 0) 경우를 보도록 하자. 이 경우는 그림에서 A점에 해당하는데, EITC 도입 후 예산 제약선이 APQRD로 변하기 때문에 개인은 취업을 선택하게 되고(점 A') 이때의 효용은 U'가 된다. 즉 EITC 점증 구간에서는 고용촉진 효과가 있다.

EITC 점감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가령 노동시간-여가 선택을 C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때 EITC의 도입으로 예산 제약선이 APQRD로 변하면, 새로운 효용곡선 U₃'가 예산 제약선과 어디서 만나는가에 따라 취로 행동이 결정된다. 만약, 선분 QR 또는 RD의 구간에서 접하지 않는다면 C'과 같이 모서리해(corner solution)가 되어, 노동시간이 결과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 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EITC가 노동공급을 촉진하는가 아닌 가 여부는 개인의 여가에 대한 선호와 EITC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른다. 단, 위 모델은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때 풀타임으로 일하는 세대주에 대한 분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취업을 하는 각 개인이 EITC 구조를 숙지하고 노동시간을 선택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ITC 도입에 따라 노동공급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실제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 특히 편모(single mother)에게 그 촉진효과가 크고, 노동시장참가 렌트의 큰 부분이 EITC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특히 기혼 여성이 취업조정을 하여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마이너스 효과가 제시되고 있다.

전체의 노동공급 및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을 보면, Scholz(1996)는, 1993년의 EITC 확충 조치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통해 줄어든 노동시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

EITC 신청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1997년에는 점증 구간이 23.3%, 고원 구간이 18.2%, 점감 구간이 58.3%이었다. 이에 대해 EITC 수급액은 각각 전체의 22.3%, 26.4%, 51.3%였다.

Liebman(1998)의 추계에 의하면 7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이며, 소득 5분위의 최저소득층이 얻은 소득 비율이 76년에서 96년 사이에 전체의 4.21%에서 3.64%로 저하되었는데, EITC에 의한 재분배로 3.77%까지 비율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EITC는 소득재분배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ITC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EITC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ckert-Hauser-Scholz(1995)는 93년의 EITC 확충에 의해 약 50만 세대가 생활 보호 수급상태에서 취로상태로 이행하였다고 추계하였다. 또한 Greenstein-Shapiro(1998)에 의하면, 96년에는 EITC 실시에 따른 소득증가에 의해 460만 명이 빈곤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Johnson(2001)도 99년에는 470만 명이 빈곤상태에서 탈피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무운영상의 효과)

EITC의 제도운영상의 장점으로는 저소득층에의 재정지원정책을 세제와 사회보장제도로 나누지 않고 세제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높은 수급률과 운영비용의 절감이 실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납세협력 의무위반(non-compliance)에 따른 과대 청구 문제와 제도의 확장에 따른 정부부담을 들 수 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다른 복지정책과 비교하여 자산조사가 없기 때문에 오류(stigma)가 작고, 유자격자의 수급률(take-up rate)이 높다. 일례로, 식품권(food stamp)의 수급률이 54~66%, AFDC(아동부양부조제도)가 62~72%인데 반해 EITC의 수급률은 80% 이상이다¹²⁾.

또한 EITC는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EITC 수급자는 가령 EIT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EITC에 따른 추가적 부담증가는 그만큼 적다고 할 수 있다. 세무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IRS 전체 연간 예산이 약 80억달러인데, 95년의 식품권 운영비용은 37억달러, AFDC는 35억달러였다. Ventry(2000)에 의하면 EITC 운영비용이 GAO 추계로는 지급액의 1%였는데 95년의 AFDC는 총청구액의 16%, 식품권은 15.4%였다.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운영하면 그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ITC에 따른 재정조치 규모는 대상자수, 공제수준 및 수급률에 의존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ITC는 80년대 후반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공제 총액도 수급자의 증가나 공제수준의 인상 등에 의해 2001년에 313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EITC에 의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인구 1인당 평균 실질 베이스로 보면 경제성장률에 비해 EITC 규모는 최근에 오히

12) 根岸(1999) 참조.

려 증가추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ITC는 납세신고서에 근거하여 급부하기 때문에 오해, 부주의, 의도적 과오에 의한 과대 청구가 적지 않다. IRS도 납세협력 의무 위반(non-compliance)에 의한 과대 지출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¹³⁾. GAO(2001)에 의하면, IRS는 두 번 과대 청구에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그 금액으로 95년 1~4월 신고에 대해 약 44억달러(EITC 청구총액 172억달러 가운데 약 26%)가, 98년 1~5월 신고의 경우 약 93억달러(동 31%)가 보고되었다. 또한 IRS에 의하면, 99년 분의 EITC 신청액 313억달러 가운데 85억~99억달러가 부적격한 것이었으며, 그 비율은 27~31.7%에 달하고 있다¹⁴⁾. 과오나 부정신고에 의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의 일실세수 총액 연간 1천억달러 가운데 EITC에 의한 것은 불과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¹⁵⁾, 과대청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영 국

가. 개인소득세 체계

영국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시민·거주자·비거주자이며 과세 대상소득은 영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부부는 별산신고를 하고 각 개인은 기초공제가 허용되며, 또한 부부공제가 있어서 부부간에 공제액을 공유한다.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소득세는 고정자산으로부터의 임대소득, 사업성 산립소득, 국

13) GAO(2001)

14) IRS(2002a, b)

15) Greenstein-Shapiro(1988)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57

채, 공공채 및 해외국채로부터의 이자소득, 상업소득 및 전문직소득, 이자소득, 해외유가증권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해외기타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배당소득과 같이 소득의 종류에 따른 체계에 따라 부과된다.

공제의 종류에는 개인기초공제, 연령에 따른 공제, 개인소득 세액 공제, 이자공제, 연금납입공제, 선원공제 및 투자공제가 있다. 개인 소득세의 세액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표 Ⅲ-4>와 같다.

- 범주별 총소득 - 공제
-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조정
- ⇒ 결정세액

<표 Ⅲ-4> 소득종류에 따른 세율(영국, 2000~2001년)

(단위: %)

	과세표준 0~1,520파운드	과세표준 1,520~26,880파운드	과세표준 26,880파운드 이상
비저축소득 (예: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	10	22	40
저축소득(은행이자 포함)	10	20	40
영국내의 배당과 세액공제소득	10	10	32.5
과세대상 생명보험 수령액 및 일시수령액	10	22	40
납세로 간주되는 생명보험수령액	22	22	40
자본이득	10	20	40

나. 과세대상 총소득

총소득은 크게 나누어 비저축소득, 저축소득(배당소득 제외), 배당소득의 범주별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에

는 근로소득, 주식옵션(share option schemes), 자영업소득, 로이드 증권인수(Lloyd's underwriters), 파트너십 소득, 토지 및 부동산소득, 해외소득, 신탁(trust and estate),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보험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다.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인적공제로서 2003년 4월 5일 종결되는 과세연도에 있어 65세 미만인 납세자는 4,615파운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은 2004년 4월 5일 종결되는 과세연도에 고정될 것이다. 65세 이상의 납세자의 인적공제금액은 65~74세 6,100파운드, 75세 이상 6,370파운드이다.

부부인 경우 부부소득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액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면 5,465파운드, 75세 이상이면 5,535파운드이다. 공제액은 소득세율 10% 적용구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며 1만 7,900파운드를 넘는 소득 2파운드 당 1파운드씩 공제액이 감소한다. 부부소득공제는 부부 두 사람이 각각 동일하게 공제를 하는 것과 한 사람이 몰아서 두 사람의 것을 공제하는 것, 이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 인적공제 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사회보험료, 지방세, 기타 국세를 제외하면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다.

필요적 업무관련비용(한정적으로 정의됨)은 고용주가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소득공제될 수 있다. 업무상 여비는 업무관련비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업무관련유혹비 및 8천파운드까지의 해고 및 재배치로 인한 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보상분은 보통 과세되지 않는다.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59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임대를 준 자산의 가치 증대나 자산 구입,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밖에 종사자 5인 이하 규모 회사의 지분 매입, 동업, 업무용 설비 및 기계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 종신연금 가입을 위한 대출이자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승인소득공제제도(approved payroll deduction schemes)에 의한 영국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현금기부, 계약증서에 의한 기부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근로자연금(employe pension schemes) 불입금은 총소득의 15%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1989년 3월 31일 이후 근로자연금에 가입한 납세자의 경우, 일정 허용한도를 넘는 소득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3년 과세연도의 경우 허용한도가 9만 7,200파운드였다(허용한도는 일반적으로 소매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매년 증가). 근로자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1988년 7월 1일 이전의 은퇴연금(retirement annuity policy)에 가입한 납세자의 경우, 총 소득의 17.5%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50세를 넘는 자에 대하여 더 높은 공제율 적용). 근로자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988년 7월 30일 이후에는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schemes)에 가입했다면 일반적으로 총 소득의 17.5%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35세 초과 연령자에게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003년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소득 허용한도인 9만 7,200파운드를 조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보험료는 소득공제할 수 없으나 1984년 3월 14일 이전에 공표된 정책상의 일부 생명보험은 예외이다. 사업조합이 가입한 연금 및 생명보험, 또는 장래급여가 있는 보험과 우정사회(Friendly Society)에서 제공하는 사망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5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고용주가 미망인이나 고아 등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납입액도 공제 가능하다.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65세 이상이면서 다음의 조건들, 즉, ①

아동보조기관의 평가(assessment), 법원의 명령, 법적인 문서 합의에 따라 지출, ② 전 부인이나 남편에게 지출, ③ 전 부인이나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음, ④ 생계비가 부인 혹은 남편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임, ⑤ 2천파운드의 공제총액 한도가 충족될 경우, 이혼으로 인한 생계비 또는 이혼수당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8세 이상의 자로서 벤처캐피털신탁에 지분이 있는 경우 10만파운드까지의 출자액의 20% 또는 납부세액 중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에 발행된 기업의 주식지분에 투자한 경우 15만파운드까지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 매각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다.

라. 세액공제

2001년 4월 6일부터 16세 미만의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사는 편부모, 부부, 미혼커플은 자녀세액공제(children's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액은 소득세율 10% 적용구간의 소득세에서 5,290파운드로, 2만 9,400파운드를 넘는 소득의 매 3파운드당 2파운드씩 공제액이 감소한다. 단, 새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그 해에는 공제액이 1만 490파운드로 증가한다.

마. 근로가구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

1) WFTC 개요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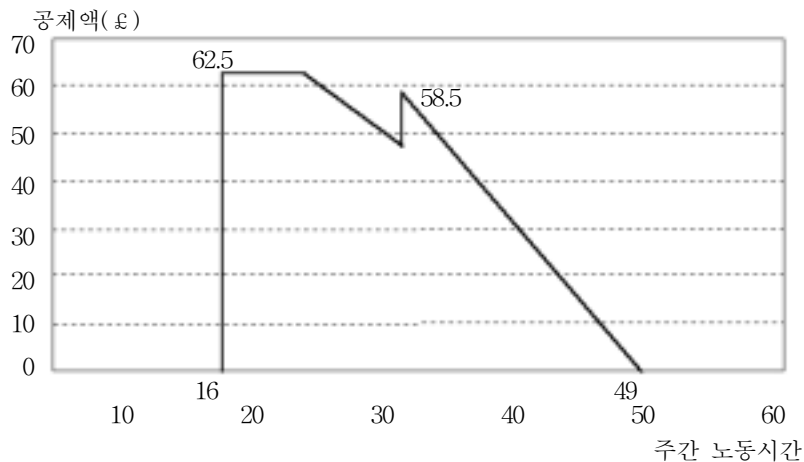
영국의 근로가구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는 가족공제(Family Credit, FC)를 확충하는 형태로 1999년 10월부터 도입되었다. 저·중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로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make-work-pay'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또한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해 육아를 지원하여 부모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FTC의 자격요건은, ① 주 16시간 일을 할 것, ② 1인 이상 양육해야 할 아동(16세 이하 또는 19세 이하의 학생)이 있을 것, ③ 자산이 8천파운드 이하일 것, ④ 영국에 거주할 것 등이다.

공제액은 기준액이 62.5파운드이며 취로자가 주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는 11.65파운드가 더해진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6세 이하의 자녀 1명에 대해 26.45파운드, 16~18세 자녀 1명에 대해 27.20파운드가 지급된다. 이 외에도 자녀양육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35파운드, 자녀가 2명인 경우는 200파운드)이 자녀양육세액공제(childcare tax credit)로 지급된다.

[그림 III-3] WFTC 개념도



주: Inland Revenue(2001)로부터 2002년 6월 이후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작성.

단 이러한 공제액은 가득 소득이나 기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감액된다. 순소득¹⁶⁾이 주 94.50파운드를 초과하면 소득이 1파운드

16) EITC는 총소득(gross income)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반해 WFTC

증가할 때마다 공제액은 55펜스씩 감액된다. WFTC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I-3]과 같다. 지급 기간은 통상 26주이다¹⁷⁾.

WFTC의 특징으로는 우선 주 16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취로조건으로 하고 있어 취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공제액 지급에 있어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하는 점증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점감 구간만 존재하며, 셋째, EITC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세대, 특히 편부모(single parent)와 무직인 부부 세대에 대한 지원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WFTC 도입 경위

부양 아동이 있는 저소득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1971년에 FIS(Family Income Supplement)가 도입되었다. FIS는 주 30시간 이상(편부모인 경우 24시간 이상) 취로하는 성인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해 부여하는 급부였다. 급부적용 대상자는 1971년 당시 약 7.1만 세대였으나, 이후 적용기준의 완화와 수급률의 개선, 대상자 수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어 1985년에는 19.9만 세대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택수당 등의 지급에 의한 FIS 감액률이 높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높아 노동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88년에는 세제조치 및 사회보장급부를 통합하여 가족공제(Family Credit)로 확충되어 90년대에 들어서는 노동시간 요건의 인하(주 24시간에서 16시간) 등의 조치에 의해 수급자가 더욱 증가하였다. WFTC는 자녀가 있는 저·중견 소득자층을

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차감한 소득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17) 26주마다 평가하여 2주에 한 번 급부하거나 임금에 더해진다. EITC가 연단위인데 비해, 26주를 단위로 함으로써 단기노동시장이나 취로 인센티브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

지원하기 위해 FC를 대신하는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로서 1998년 Taylor 보고로 도입이 추천되어, 1998년 10월에 도입되었다.

3) WFTC 이용 현황

WFTC(1999년 도입 이전은 FC) 적용 세대는 1988년 5월 26만 세대, 1997년 11월에는 79만 세대였으나, 2001년 11월에는 129만 세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평균 공제액을 보면, 1988년의 주 28.31파운드에서 1997년 주 59.31파운드, 2001년 주 83.98파운드로 공제액 역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서 공제액의 추가 급부를 받는 세대는 76만 세대이다. 또한 아동부양공제도 함께 받고 있는 세대는 16만 세대이며, 아동부양공제제도의 평균 공제액은 주 38.97파운드이다.

수급세대의 구성을 보면 편모가 50%, 남성이 주 수입원(main earner)이며 자녀가 있는 부부세대가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급세대의 연령층을 세대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49%, 40~49세가 24%, 20~29세가 22%이다. 수급기간은 실제로는 2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급세대의 72%가 26주간을 상회하고 있어 4년 이상이 되는 세대도 10%에 달하고 있다.

4) WFTC의 경제효과

(노동공급 촉진효과)

우선 세액공제를 받는 세대의 가득 수입 및 노동시간별 분포를 보도록 하자. 노동시간별 분포를 보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 16시간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편모인 경우 공제액이 추가 되는 주 30시간에서 다시 한 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ITC와 같이 점증 구간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시간에서 불연속적으로 공제가 지급 내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노동시간과 가처분소득과의 관계를 보면 WFTC가 존재함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주 16시간 및 30시간인 지점에서 가처분소득이 불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F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편모나 배우자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기혼자에 대해 취로촉진효과가 있는 반면 이미 배우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혼자의 노동공급에는 마이너스의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Blundell-Hoynes(2001)이나 Blundell-Reed(2000) 등에 의하면, WFTC에 따른 노동공급 촉진효과는 약 6만 세대의 무직(workless) 세대의 감소 및 전체적으로 약 3만 세대의 노동공급 추가로 시산되고 있다. 가족 속성별로는 편모, 배우자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기혼 남성 및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한편,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 기혼 남성 및 여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타났다.

(WFTC의 재분배효과)

Dilnot-Mcrae(1999)에 의하면 WFTC 도입에 따른 소득십분위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제2분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고(약 1.8%), 제3분위(약 1.2%), 제4분위(약 0.5%)로 이어지며, 소득공제 등에 비교하여 저소득층에의 재분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ilnot-Mcrae는 WFTC의 역할로서 노동공급 촉진효과보다 재분배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세대별 구성을 보면, 1997년 이후의 개혁에서는 이동부양공제 대상이 풀타임 노동자에게 가장 메리트가 큰 반면, 배우자가 주 200파운드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부수입자(second-earner)의 취업 인센티브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FTC가 도입된 이후 9개월 동안 약 2.5만 명의 편부모의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¹⁸⁾.

18) Brewer-Gregg(2001)

3. 호 주

가. 개인소득세 체계

호주의 개인소득세제는 과세대상자를 거주자, 정부로부터의 연금·수당(allowance)·급여(payment)를 받는 자, 면세점(5,400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18세 이하의 독신 미혼자로서 643호주달러를 넘는 소득이 있는 자,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 원천세액공제를 제외한 호주 내에서의 소득이 1호주달러 이상인 자 포함), 기타소득자,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주자란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이민자 또는 한 해 절반 이상을 호주에 체류한 자로 거주지가 해외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타소득자에는 자녀지원평가(Child Support Assessment)하에서 책임이 있는 부모, 고지할 만한 부가급여 취득자, 사업영위자, 전년도 손실신고자, 신탁수입 또는 파트너십 이자소득이 있는 자, 해외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표준규정(income averaging provision)상의 전문직 종사자(음악·예술·드라마·문학작가·발명가·직업운동인 등)가 속한다.

개인소득세의 세액계산과정은 다음과 같고 세율은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조정

⇒ 순세액(net tax payable) + HECS 및 SFSS 납부금 + 의료과세(Medicare Levy) 및 부가세 - 세액공제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표 III-5> 호주의 소득세율(2000년)

(단위: 호주달러, %)

과세표준	세율
0~6,000	0
6,001~20,000	17
20,001~50,000	30
50,001~60,000	42
60,000 초과	47

나. 과세대상 총소득

총소득의 범주에는 임금 및 급여, 팁, 관리자수당, 기타 수당(allowances), 일시불소득(lump sum payments), 퇴직금(termination payment), 정부로부터의 수당(Newstart, 아동수당, austudy payment), 정부로부터의 연금, 부가급부, 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 소득공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피고용 근로소득 또는 그 외 다른 소득을 얻기 위한 실질적 업무관련 비용, 예를 들면, 업무관련 출장비, 업무관련 교육비, 차량유지비, 거래회사에의 예약금(subscriptions), 세무비용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다.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성격의 비용은 소득공제할 수 없다. 유흥비도 소득공제할 수 없으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유흥비(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의 대상)는 예외이다. 특정자선단체, 문화단체, 환경관련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2호주달러 이상의 기부금은 소득공제 가능하다.

라.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가구소득이 일정 한도 이하이면서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21~24세의 재학중 자녀(청년수당이나 그와 유사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를 두고 있을 경우에 가구세액공제A(family tax benefit Part A)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다 가능할 경우 어느 한 쪽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2만 9,857호주달러 이하이면 가구세액공제 A 최대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 가구소득이 2만 9,857호주달러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달러당 공제금액이 30센트씩 기본세액공제액까지 감소한다.

기본세액공제액은 7만 7,234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소득의 달러 당 30센트씩 감소한다. 기본세액공제액이 소멸되는 연간 가구소득의 한계점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8만 665호주달러, 18~24세 자녀를 둔 경우 8만 1,846호주달러이다. 이 한계점은 첫 자녀 다음의 18세 미만 자녀당 6,570호주달러씩, 18~24세 자녀당 7,750호주달러씩 증가한다. 가구세액공제A의 연간 최대금액은 자녀가 13세 미만일 경우 3,204.70호주달러, 13~15세일 경우 4,062.45호주달러, 16~17세일 경우 1,029.30호주달러, 18~24세일 경우 1,383.35호주달러이다. 가구세액공제A의 기본공제금액은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1,029.30호주달러, 18~24세일 경우 1,383.35호주달러이다.

가구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일 경우 가구세액공제A에 더하여 가구세액공제B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최고소득 가구원의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이 1,679호주달러 이하이면 최고소득의 가구원 소득에 관계없이 가구세액공제B의 최대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최고소득 가구원의 조정과세소득이 1,679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하는 달러당 공제금액이 30센트씩 감소한다(두 번째 최고소득 가구원의 소

득이 가장 어린 자녀가 5세 미만일 경우 1만 853호주달러, 5~18세 일 경우 8,079호주달러가 될 때까지 감소). 편부모일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금액만큼 공제 가능하다.

가구세액공제B의 연간 최대금액은 가장 어린 자녀가 5세 미만일 경우 2,752.10호주달러, 5~15세 또는 재학중이면서 16~18세일 경우 1,919.90호주달러이다.

2) 기타 세액공제

저소득가구의 자녀보육비용을 지원해주는 육아세액공제(childcare benefit)가 있다.

순소득이 6,029호주달러(2001년 및 2002년) 이하인 부양가족으로서의 배우자에 대하여 최대 1,437호주달러까지 배우자세액공제(spouse rebate)가 가능하다. 단, 가구세액공제B의 대상이 되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소득이 1만 800호주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앞으로 납입하는 3천호주달러까지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fund), 은퇴대비저축(retirement savings account)의 불입금에 대하여 최대 540호주달러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용 1,250호주달러 초과분에 대하여 20%, 개인건강보험료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tax rebate)가 가능하다.

4. 독일

가. 개인소득세 체계

독일은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거주자는 독일 내에 주거지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하는 자를 말한다.

과세대상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독일 내외의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해당된다. 과세대상소득은 총소득에서 일정 비용(보험액, 세무상담비용, 일정한도 내의 선물금액, 교회세 등)과 특별비용(예: 이혼이나 별거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일반적인 개인소득세 신고방식은 부부합산 신고이나 별산신고할 수도 있다. 개인소득세의 세액계산과정은 다음과 같고, 세율은 <표 Ⅲ-6>에서와 같이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소득종류별 순소득을 합산한 총과세대상소득 - 개인공제
 ⇒ (과세표준 - 세액공제 및 공제(allowances)) × 세율
 ⇒ 결정세액

<표 Ⅲ-6> 독일의 소득세율(2000~2001년)

(단위: 마르크, %)

독신납세자		부부합산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3,499 이하	0	26,999 이하	0
13,500~17,495	22.9~25	27,000~34,991	22.9~25
17,496~114,695	25~51	34,992~229,391	25~51
114,695 초과	51	229,391 초과	51

나. 과세대상 총소득

과세대상 총소득에는 농업 및 임업소득, 산업 및 상업소득, 자영업소득, 급여, 자본소득, 부동산 및 특정동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된다. 한 종류의 소득으로부터의 손실은 일정 범위(10만마르크, 합산 신고일 경우 20만마르크) 내에서 다른 종류의 소득을 상쇄 가능하

다. 실업급여, 거주수당(lodging allowance),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 등은 면세소득이 된다.

다.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로서의 소득공제에는 자녀공제(child allowance), 16세 미만 자녀추가특별공제, 근로자공제(employee allowance)가 있으며 각각 공제액은 차례대로 3,648유로, 2,160유로, 1,044유로이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위하여 자녀 1인당 924유로의 교육공제(educational allowance)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한 특별공제(specific allowance and reliefs)가 있다.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특별공제(specific allowances) 공제액이 두 배로 된다.

2) 인적공제 외

공식서류화된 필요경비적 업무관련비용은 고용주가 그것을 보상해주지 않는 한 소득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에는 업무관련 출장비용, 업무관련 출판비용, 업무관련 예약금, 전문가수수료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경우, 연간 1,044유로까지 포괄근로자공제(blanket employee allowance)가 적용되고 1,044유로를 넘는 업무관련비용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만 공제된다.

사회보험료와 개인보험은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다. 이때의 공제는 3단계를 거친다. 우선 독신일 경우 3,068유로, 부부일 경우 6,136유로가 공제된 금액은 다시 총소득의 16%만큼 차감된 후, 독신일 경우 1,334유로, 부부일 경우 2,668유로만큼 두 번째로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의 절반이 독신일 경우 667유로, 부부일 경우 1,334유로까지 공제 가능하다.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71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가능하나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비용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독일자선단체와 특정 국제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조정총소득의 5%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기부의 목적이 과학과 관련될 경우 공제율이 10%로 증가한다.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연간 총 1,534유로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부 공제 가능하다.

라.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셋째 자녀까지 1인당 1,848유로, 넷째 이상 자녀 1인당 2,148유로의 공제가 가능하다.

5. 프랑스

가. 개인소득세 체계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파트너십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동업자 각각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은 누진적이지만(<표 III-7> 참조) 일부 소득의 경우는 단일세율이다. 개인소득세 세액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종류별 순소득을 합산한 총소득 - 소득공제

⇒ 순 총소득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표 III-7> 프랑스의 소득세율(2001년 기준)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 율
4,121 이하	0
4,122~8,104	7.5
8,105~14,264	21
14,265~23,096	31
23,097~37,579	41
37,580~46,343	46.75
46,344 이상	52.75

나. 과세대상 총소득

과세대상 총소득에는 고용소득, 사업소득, 고정자산 소득, 농업소득, 전문직소득, 유한합작회사 관리자의 소득, 투자소득, 자본이득 등이 포함되고, 이 총소득에서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구한다. 소득이 4,121유로 이하일 경우 면세되며, 그 밖에 특정한 정부대출금 이자, 연금, 자본이득도 면세된다.

다. 소득공제

근로자는 업무관련비용에 대하여 10%의 표준공제(2001년 소득의 경우 1만 2,229유로 한도)와 항목소득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항목공제는 업무비용이 임금이나 급여의 10%가 될 경우에 최저 2,310프랑, 최고 7만 7,460프랑이 허용된다.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73

항목공제 또는 표준 10% 공제 후에 70만 7,000프랑을 한도로 하여 임금 및 급여, 연금 또는 종신연금의 법적 신고액의 20%에 상당하는 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언론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첫 7,650유로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프랑스사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가능하나 국가간 조약이 없는 한, 해외연금에 대한 선택적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경우 20%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2001년의 경우 2만 2,380유로 한도).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자도 소득공제 가능한데, 공제액은 소득이 6만 1,900프랑 이하일 경우 1만 10프랑, 소득이 6만 1,900~10만 100프랑일 경우 5,020프랑이다.

전 배우자에게 지급된 이혼수당(Alimony)과 부양아동 생계비 또한 공제 가능하다.

라.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1998년 1월 1일 이전의 대출에 한함), 주택의 유지 및 보수비용, 개인보험료, 자선기부금, 가정내 고용인 비용, 학비, 자녀보육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다. 국내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에 대하여 그 5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 일 본

가. 일본소득세제의 연혁 및 특징

일본 세제의 기본적인 이념과 구조는 샤우프 권고에 근거하고 있다. 샤우프 세제는 1949년 미국의 칼 샤우프(Carl S. Shoup)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에 의해 작성되어 일본세제의 전면적인 개혁안으로서 발표된 것이다. 이 포괄적 세제개혁안은 1949, 50년도의 세제개정시 많은 부분이 실시되어 현재까지 일본세제의 기본이 되고 있다.

샤우프 세제의 이념은 공정·중립·간소라는 3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안정적인 세제를 확립하고, 직접세(특히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소득세에 관해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 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선택과세폐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소득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율인하 단행이 의도되었다.

샤우프 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소득세제의 특징으로는, 1)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기준을 정하는 종합과세 원칙, 2)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인적사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면제하는 과세 최저한의 설정, 3) 산정된 과세소득에 관해 초과누진과세라 불리는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액을 결정하는 누진소득체계이다. 이것은 과세 소득을 몇 개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고액 소득계층에 대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나. 과세체계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소득을 발생원인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하고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75

있다. 10종류의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급여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일시소득·잡소득이다.

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보면 우선, 이상의 10종류별 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구한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분리과세를 하므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과세는 종료한다. 또한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산림소득과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초공제 등 15종류의 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제는 인적공제와 금전적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에는 기초인적공제와 특별인적공제 2종류가 있다. 독신의 경우는 본인에 대한 공제인 기초공제(현재 38만엔)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부양공제 등이 적용된다.

급여소득·퇴직소득에 관해서는 필요경비를 대신하여 특별공제를 설치하고 있다. 즉,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소득공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공제라고 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정해져 있다. 급여소득공제의 경우 근무에 따른 표준적인 경비를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져 있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의 장기성이나 퇴직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다.

금전적 공제로서는 사회보험료공제·생명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 등이 있다. 또한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소득에서 일정비율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이상의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다.

한편, 잡소득 중 공적연금에 관한 것으로는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차감한 액인 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이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양도자산 취득가격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나,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에 특별공제 등 소득계산 특례도 있다. 또한 유가증권양도익에 대해서도 특별한 과세방식이 적용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난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의 사람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소득을 최저과세점(면세점)이라고 한다. 이 면세점은 기초공제 등의 수준에 따라 그 수준이 변동하는데 현재 부부와 자녀 2명의 표준적인 급여생활자 세대인 경우는 384만 2천엔이다.

소득을 그 원천 내지는 성질에 따라 10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소득은 그 성질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공평 부담의 관점에서 담세력이 다른 것을 고려한 계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예컨대 유족이 받게 되는 급부급이나 연금, 급여생활자가 받는 출장비 등과 같이 과세되지 않는(비과세) 소득도 있다.

<표 III-8> 소득세 최저과세점(면세점) 내역(급여생활자의 경우, 2002년)

구분	독신	부부	부부+자녀1	부부+자녀2		
				특정부양1	특정부양 무	
면세점	1,144천엔	2,200천엔	2,833천엔	3,842천엔	3,466천엔	
내역	급여소득공제	650	840	1,030	1,308	1,220
	기초공제	380	380	380	380	380
	배우자공제	-	380	380	380	380
	배우자특별공제	-	380	380	380	380
	부양공제	-	-	380	380	760
	특정부양공제	-	-	-	630	-
	사회보험료공제	114	220	283	384	346

주: 부부와 자녀 1인인 경우는 16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부부와 자녀 2인 가운데 특정부양1인 경우는 16세 미만 자녀가 1인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특정부양 무의 경우는 16세 미만 자녀가 2인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출처: 稻垣光隆 編(2002), 『圖說 日本の税制』

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크게 나누어 인적공제와 잡손실공제나 사회보험료공제 등 기타 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도 그 취지에 따라 기초·배우자·부양공제 등 소위 기초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장애인·연소자공제 등 보통 사람들과 비교하여 생활상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공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배우자공제 및 부양공제는 납세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으며 이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인정된다. 이 외에도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특별공제가 있다. 부양공제에는 특정부양공제·노인부양공제 등 연령에 따른 다양한 가산·할증공제가 인정된다.

장애인·연소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특별)장애인공제, 노년자공제, 과부(홀아비)공제 및 근로학생공제 등이 있다. 이들 공제는 기본적으로는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노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나, (특별)장애인공제에 관해서는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특별)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노년자·과부(홀아비)·근로학생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등 일정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며, 과부공제에 대해서는 특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공제액이 할증되는 경우도 있다.

라.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과세소득 산출 단계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와는 다른 것이다.

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에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배당공제 및 일본 소득세와 외국 소득세 이중부담 조정을 위한 외국세액공제라고 하는 두 개의 세액공제 규정이 정해져 있다.

배당공제는 법인세에는 선불 소득세의 요소가 있다고 해석하고, 법인세와 소득세간의 이중과제를 배제한다고 하는 요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소득금액의 10%(과세총소득금액 등이 1천만엔을 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가운데 과세총소득금액에서 1천만엔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에 관해서는 5%) 상당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외국세액공제는 외국에 그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그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소득세에 상당하는 외국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소득에 대해 다시 일본의 소득세가 부과되면 국제간에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소득세액 가운데 일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다.

기타 조세특별조치법으로 주택차입금 등을 지니는 경우의 세액공제나 시험연구비액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가 있다.

마. 급여소득에 관한 과세

급여소득에 관한 소득세액계산의 개요를 설명하면, 우선 급여 수입금액에서 급여소득공제를 차감한 급여소득금액이 계산되면 각종 소득공제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이 결정된다.

급여소득공제는 1) 급여소득자가 근무 내지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표준적으로 공제하는 요소와, 2) 급여소득의 특이성으로 인해 다른 소득과의 부담조정이라는 요소가 있다.

급여수입이 500만엔인 경우의 급여소득공제액은 수입의 30.8%에 해당하는 154만엔이 되지만, 그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79

거시적으로 보아도 2001년 예산 기준으로 급여소득공제액이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4%였다.

한편, 급여소득자가 통근비, 전근에 따른 비용 등 특정한 항목에 지출을 한 경우 그 합계액이 급여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여소득금액 계산상 급여소득공제액 이외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특례가 1988년 12월의 세제개혁 당시 도입되었다.

<표 III-9> 급여소득공제제도의 개요

급여수입	공제율
	(최저 65만엔)
180만엔 이하 부분	40%
360 "	30%
660 "	20%
1,000 "	10%
1,000만엔 초과부분	5%

출처: 稻垣光隆 編(2002), 『圖說 日本の税制』

<표 III-10> 급여소득공제 비율

급여수입	공제액	비율
만엔	만엔	%
50	50	100.0
100	65	65.0
150	65	43.3
200	78	39.0
300	108	36.0
500	154	30.8
800	200	25.0
1,000	220	22.2
1,500	245	16.3
2,000	270	13.5

출처: 稻垣光隆 編(2002), 『圖說 日本の税制』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해서는 원천징수제도가 채용되어 급여 등이 지불될 때 그 지불액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정부에 납부된다. 더욱이 그해의 마지막 급여 등이 지불될 때 그 연중 급여 총액에 대한 정규 연두세와 급여 지불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액을 대비하여 과부족액의 정산(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한다)이 행해져 급여소득자가 신고납세를 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마.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

소득세는 일정의 과세기간 내에 가득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1년)이 종료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에 관한 원칙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불할 때 일정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특정소득에 관해 그 소득발생단계에서 그 지불원천으로 소득지불을 한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을 징수하여, 그것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주로 징세확실성과 납세자의 번잡한 납세절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은 이자·배당·급여·보수·요금 등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자가 그 연도분의 소득세에 관해 확정신고를 할 때에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 단, 급여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말조정』 제도가 있어, 그해 마지막으로 받는 단계에서 정산이 이루어진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되어 있는 이자소득이나 일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만으로 최종적으로 납세액이 확정되므로 달리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III. 주요국의 근로소득세제 81

<표 III-11>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비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 공제	인적 공제 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3천달러, 조정총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시 초과액 2%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공제: 독신자 4,700달러, 부부합산신고 7,850달러, 부부별산신고 3,675달러, 가구주 6,900달러 항목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존재: 세금, 기부금 등 - 한도 없음: 의료비, 투자비용, 상해·도난손실, 업무관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세액공제: 최대 600달러, 7,370달러까지의 소득의 24%(자녀 1명의 경우), 자녀 3명 이상이면 환급가능 저소득세액공제: 4,910달러까지의 소득의 7.65%, 25~64세만 해당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 4,615파운드(65세 미만), 6,100파운드(66~74세), 6,370파운드(75세 이상) 부부공제: 5,465파운드(65세 이상), 5,535파운드(7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제 대상: 의료비, 사회보험료, 개인보험료(일부 보험예외), 지방세, 기타 국세 업무관련비용 공제(여비 제외) 대출이자 공제: 임대자산 또는 업무용 차량 구입 등을 위한 목적 기부금 공제: 자선단체 기부 등, 계약에 의한 기부 포함 근로자연금 공제(총소득의 15%까지), 은퇴연금(총소득의 17.5%) 이혼수당 및 이혼생계비 공제 벤처캐피털 출자 공제, 주식투자 공제, 채권매각손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세액공제: 최대 5,290파운드(세율 10% 적용구간의 소득세에 적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8만엔 배우자특별공제: 추가 38만엔 자녀(16~22세)공제: 추가 25만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공제: 공제 5개 소득 구간별로 '표준공제액+초과분의 일정비율(40,30,20,10,5)' 사회보험료 공제(전액), 개인보험료 공제(일정 한도) 의료비 공제: 의료비 10만엔과 총소득의 5% 중 적은 금액, 200만엔 한도 지정기부금 공제(일정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담보대출이자 세액공제: 10년 동안 매년 500만엔 이하의 대출잔액의 1% 특별세액공제: 20%(연간 25만엔 한도) 배당소득세 세액공제: 추가로 특별간주세액공제 가능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공제: 3,648유로 16세미만자녀 추가특별공제: 2,160유로 근로자공제: 1,044유로 교육공제: 924유로 노인및장애자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관련비용 공제: 1,044유로(포괄공제)+초과분 사회보험료 및 개인보험료 공제(일정 한도) 임대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자산소득에서 공제 기부금 공제: 조정총소득의 5%(과학관련 기부는 10%, 정당기부는 1,534유로까지)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 비급여 해당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세액공제: 셋째까지 1인당 1,848유로, 넷째 이상 1인당 2,148유로

<표 III-11> 계속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 공제	인적 공제 외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관련비용 공제: 10% 표준공제와 항목공제(업무비용이 소득의 10%일 경우, 2,310~77,460프랑) 중 선택, 이후 임금, 연금 등의 20% 공제 가능(70.7만프랑 한도) • 사회보험료, 실업보험,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는 20% 추가공제 가능(2001년 22,380유로 한도) •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 공제: 10,010프랑(소득 61.9만프랑 이하), 5,020프랑(소득 61.9만~10.01만프랑) • 이혼수당 및 부양아동생계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이자(98년 이전 대출), 주택 유지 및 보수비용, 개인보험료, 자선기부금, 학비, 자녀보육비: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 배당소득세 세액공제: 50%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관련비용 공제 • 기부금 공제: 특정자선단체, 문화단체, 환경관리단체, 공공기관에의 2호주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 자녀 나이 따라 최대공제액 3,204.7~1,383.35호주달러, 기본세액 1,029.3 또는 1,383.35호주달러 • 추가자녀세액공제: 가구소득의 대부분이 어느 한 가구원의 것일 때 한함, 최대공제액은 2,752.1~1,919.9호주달러 • 육아세액공제: 저소득가구 육아비 지원 • 배우자세액공제: 최대 1,437호주달러 • 퇴직연금, 은퇴대비저축 세액공제: 최대 540호주달러 •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30% • 의료비용 세액공제: 의료비 1,250호주달러 초과분의 20%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서 본 장에서는 공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근중(1997)과 손광락(1999)이 있는데 김근중(1997)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ITC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손광락(1999)은 기존의 공제제도의 효과에 세율감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 효과까지 감안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분석에 이어 안중범·송재창(2000), 원윤희(2001)는 구체적으로 EITC 제도 도입방안과 이로 인한 재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도입되었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편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제제도 개편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공제제도의 효과를 주요국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구조와 비교·분석하고 다음으로 Browning(1995)의 방법론을 따라 두 제도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소득세 부담구조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공제제도의 효율성분석에 기초하여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기본공제와 기타특별공제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제도는 과세소득의 정액변화를 야기하므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단순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가. 현 황

우리나라의 조세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수요 증가로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민부담률은 1998년 22.9%에서 2002년 28.0% 수준으로 증가하여 이미 일본의 27.1%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다(<표 IV-1>). 특히 도입 초기단계에 있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보장기여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높은 국민부담률 수준은 향후 추가적인 세율인상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1>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한국('98→'02)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ECD
조세부담률(%)	19.1 → 22.7	22.7	17.2	31.0	28.9	28.5
국민부담률(%)	22.9 → 28.0	29.6	27.1	37.4	45.4	38.6

주: 외국은 2001년 기준(한국: 22.2%)

자료: 재정경제부

우리나라 조세수입구조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소득과세(개인소득세·법인세·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인소득세(개인소득과 자본이득에 부과)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의 14.6%에 불과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표 IV-2>).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현재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85

국민연금기여율의 대폭적인 인상¹⁹⁾(9%→15.9%)과 건강보험의 요율 조정 등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소득과세의 비중이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 차이는 향후 사회보장기여금의 인상을 고려할 때 개인소득세 확대로 나타날 여지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법인 수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국제적인 조세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기업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에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어 적정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재분배에 유리한 개인소득세 혹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소비세의 역할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조세수입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비과세 비중은 38.3% 수준으로 미국·일본 등에 비해서는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소비과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형평성의 관점에서 소득관련과세와 재정지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표 IV-2> 주요국의 조세수입 구조(2000)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 관련세	소비세 및 관세	사회보장 기여금	기 타
한 국	14.6	14.1	12.4	38.3	16.7	3.9
미 국	42.4	8.5	10.1	15.7	23.3	-
일 본	20.6	13.5	10.3	18.9	36.5	0.2
프랑스	18.0	7.0	6.8	25.8	36.1	6.3
영 국	29.2	9.8	11.9	32.3	16.4	0.4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통계 국제비교』, 2003. 7(제1호).

19)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

<표 IV-3> 소득세 과세인원 및 구조변화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연말정산자	10,212	9,276	9,390	11,102	11,555
(갑)근로소득납부자	6,944	6,269	5,520	5,934	6,446
납부자비중(%)	68.0	67.6	58.8	53.4	55.8
종합소득세과세자	1,299	1,226	1,342	1,616	1,78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근로소득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연말정산자 수준은 1997년²⁰⁾ 10,212천명 수준에서 외환위기 후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9,276천명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가 2001년에는 1997년 수준을 13% 상회하는 11,555천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2001년 6,446천명 수준으로 1997년 6,944천명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연말정산자 규모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의 비율인 납세자 비율은 1997년 68.0%에서 2001년에는 55.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납부자 비중의 감소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의 증가와 면세소득수준을 증가시키는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확대(2001년)를 들 수 있다. 반면 2001년 종합소득과세자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퇴직자들의 유입과 꾸준한 세원양성화 노력으로 1997년 수준보다 37.2% 증가한 1,782천명으로 나타났다.

면세 소득수준과 최저생계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경우 면세 소득수준이 15,235천원으로 2002년 최저생계비의 1.28배로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면세 소득수준이 11,727천원으로 크게 변하지 않

20) 외환위기의 영향이 적었던 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이전인 1996년 연말정산자 10,467천명과도 큰 차이가 없다.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87

는 반면 최저생계비는 4,140천원으로 낮아져 그 비율이 4인 가구의 2배 이상인 2.83배로 높아졌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소득 비율의 차이²¹⁾는 현재의 근로소득세 제도가 가구규모에 따른 필요 소득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IV-4> 면세 소득수준과 최저생계비와의 관계

(단위: 천원, 배)

	면세 소득수준(A)	최저생계비(B)	비율(A/B)
4인가구	15,235	11,880	1.28
1인가구	11,727	4,140	2.83

주: 2002년 기준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Webpage.

일인당 평균 소득세 부담액(결정세액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997년 이후 연평균 11.3%씩 증가하여 2001년에는 1,109천원/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와 높은 면세소득수준으로 인해 납부대상 근로자 규모 증가는 미미한 가운데 중상위계층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세부담 증가율은 소득(과세표준) 증가율보다 높아 근로소득자들의 유효소득세율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그 원인으로는 실질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및 공제금액 체계, 근로소득공제율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1년 현재 3,107천원/인에 불과해 여전히 1997년 수준

21)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게 조사되었다는 비판도 있으며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소득 비율의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3,140천원/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퇴직근로자들의 유입과 세원양성화 노력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자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01년 기준 종합소득신고자들의 평균 과세소득은 19,303천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20,212천원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유효세율 측면에서는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1997년보다 0.6%포인트 증가한 16.1%를 보여줘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 역시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득세 부담(율)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에 관계없이 증가하여 왔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아진 세원(납세자 수 및 비율의 하락)으로 인해 중상위계층의 세부담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고 동시에 면세자 증가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표 IV-5> 일인당 소득세 부담구조

(단위: 천원/인)

	1997	1998	1999	2000	2001	평균증가율(%)
종합소득자						
과세소득	20,212	17,469	18,386	19,902	19,303	-1.1
소득세액	3,140	2,460	2,651	2,972	3,107	-0.3
실효세율(%)	15.5	14.1	14.4	14.9	16.1	0.9
갑종근로소득자						
과세표준	7,171	6,822	7,284	8,984	9,581	7.5
소득세액	722	693	786	1,024	1,109	11.3
실효세율(%)	10.1	10.2	10.8	11.4	11.6	3.6

주: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소득(Taxable income),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Tax base)이며 세액은 결정세액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소득계층별 부담구조

근로소득자에 대해 어느 정도 조세부담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89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적조세이론을 통해 알 수 있다. 최적조세이론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은 중간소득층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용된 가정들의 현실성 결여와 형평성 확보측면에서 실제 한계소득세율은 절대적 수준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유사한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하에서도 각 국가별로 나타나는 절대적인 누진도의 차이는 상당하다. 이는 누진도가 형평성에 대한 사회의 허용수준 혹은 인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득세율의 국제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반면 노동에 대한 과세정책이 국가 경제활동 및 국제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경제구조 혹은 발전단계에 따른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소득세 구조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 및 근로유인 제공 등의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도 등 소득계층별 부담 구조를 세율, 실효평균세율, 실효한계세율 등의 국제비교(미국·영국·일본·한국)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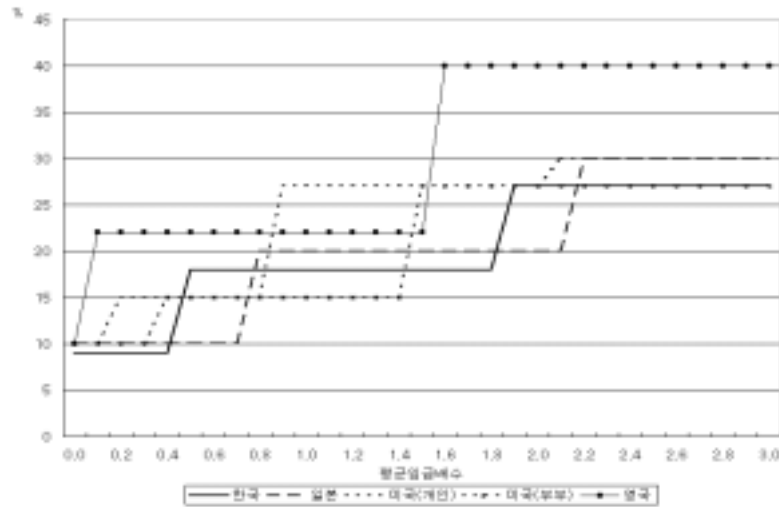
근로소득세 구조의 국제비교를 위해 절대적 임금수준²²⁾보다는 국가별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소득수준을 이용하였다. 이는 국가별로 유사한 소득계층을 비교함으로써 세율구조 변화 등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다.

근로소득세 명목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36%로 주요 선진국들의 40% 내외와 큰 차이가 없으나 비교대상 구간인 생산직 근로자 평균소득의 3배 이내 구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소득 부근의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율은 우리나라가 18%로 미국의 부부 과세의 경우

22) 2002년 기준 한국 21,653천원, 일본 4,254천엔, 미국 32,188달러, 영국 19,708파운드임.

(15%)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낮은 세율구조는 소득이 평균의 2.5배 이상인 구간에 있어서도 유지되어 비교 4개국 중 가장 낮은 27%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높은 소비과세 비중,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소득과약률 차이 등 소득세율을 높일 수 없는 여러 요인들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각 소득세율의 적용구간은 낮은 세율구간 적용 폭이 매우 좁은 영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평균 소득수준의 개인납세자와 부부납세자와의 적용세율이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필요비용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 소득수준별 소득세율



근로소득 계층별 세부담을 계산하기 위하여 OECD의 조세방정식 (tax equations)을 이용하였다. 동 식은 OECD 회원국 내에서 개인의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부담과 가구에 대한 정부보조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개인 혹은 가구측면

의 소득세부담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방세²³⁾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가 정확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근로자의 세부담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공제 60만원만 고려되어 있어 특별공제²⁴⁾로 인한 공제금액이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세부담은 제시된 수준보다 낮게 된다. 한편 분석구간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포함되는 평균 근로자 소득의 3배까지로 설정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실효평균세율을 살펴보면 명목세율이 낮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IV-2]). 동 세율의 변화패턴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3개 국가가 초기에 높은 증가를 보이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율이 점차 완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대로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완만하게 실효평균세율이 증가하다가 점차 누진도가 증가하는 상반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누진구조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하며 중상위 소득자들의 근로유인 제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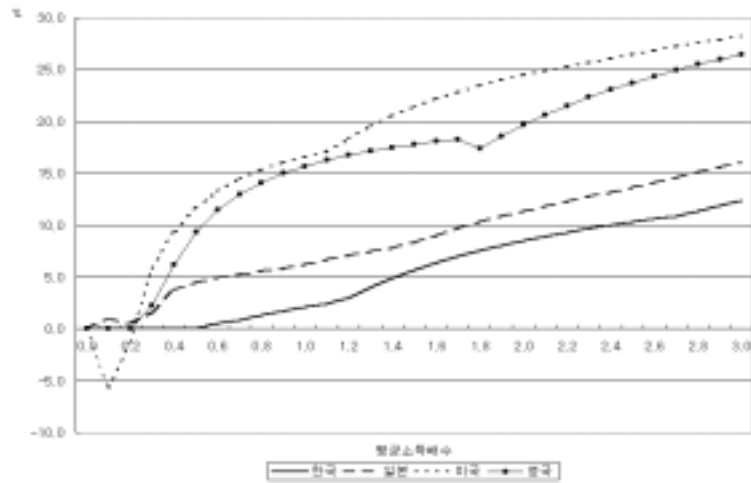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음(-)의 실효평균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EITC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즉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로 정부지원을 받게 되어 음(-)의 실효평균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원수에 따라 EITC제도 적용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4인가구의 경우 넓은 소득구간에서 나타나게 된다. 영국의 경우에도 4인가구는 일정소득 이하에서 음(-)의 실효평균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공되는 환급 가능한 자녀양육세액공

23) 지방세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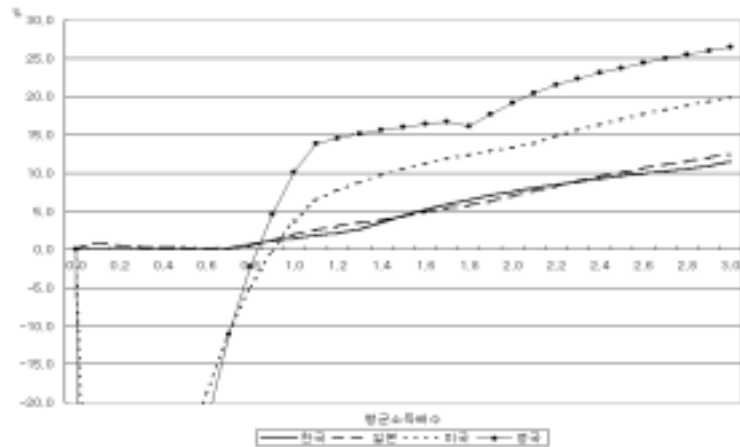
24) 2001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특별공제액수는 약 170만원 수준임.

제(Childcare Tax Credit)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가구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로 인한 것이다.

[그림 IV-2] 소득수준별 실효평균세율(1인 가구)



[그림 IV-3] 소득수준별 실효평균세율(4인 가구)



주: 4인가구란 부부 2인, 16세 이하 자녀 2인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1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93

한편 면세자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평균소득의 2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어 과세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균소득의 40~50%까지 면세자로 남게 되어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누진구조의 차이와 높은 면세자 비중은 기존의 근로소득세제 개편이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근로자 1인의 소득에 의존하는 평균적인 4인 가구의 경우 실효평균세율은 1인가구와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그림 IV-3]). 4인가구의 실효평균세율은 비교대상 국가 모두 공제제도 등으로 인해 1인가구의 그것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1인가구에 대해 높게 설정된 면세점 그리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세제측면의 고려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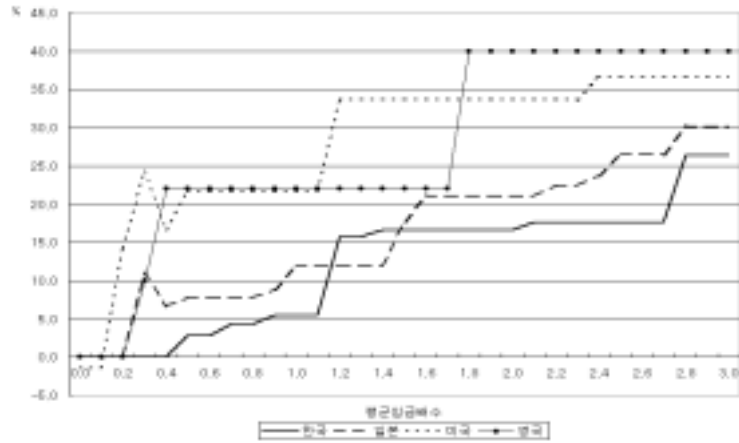
한편, 면세자의 범위는 1인가구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인가구의 면세소득의 범위는 평균소득의 60~70%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 및 자녀에 대한 높은 세제지원으로 평균소득의 80~9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음(-)의 실효평균세율은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의 고려로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일본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효평균세율의 누진구조 측면에서도 소득증가에 따라 누진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유사한 세부담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명목세율의 경우 평균소득의 80% 이상의 전 구간에서 일본이 높은 구조이나 실효평균세율은 평균소득의 150~200%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높은 현상을 나타낸다. 즉 평균소득 이상의 구간에서 누진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중상위 소득자들의 체감 세부담 증가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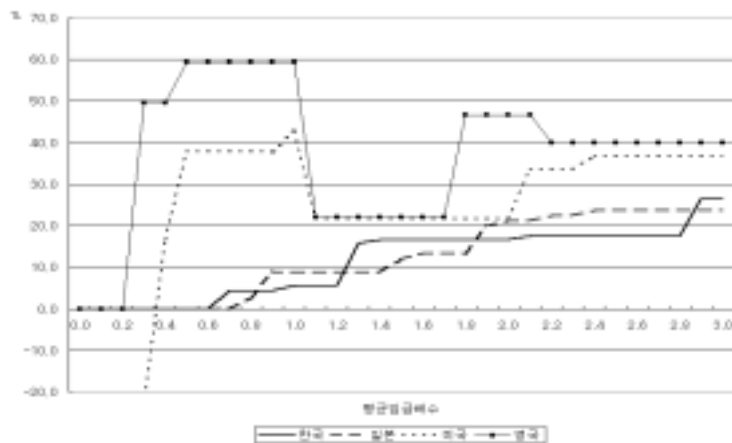
이러한 중간소득층 이상의 높은 세부담 증가율은 실효한계세율의

변화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인가구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면세점 이상에서 높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보인 다음 점차 추가적인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완만한 한계세율의 증가세가 평균소득을 넘어서자 급격히 높아져 동 소득구간에서 느끼는 세부담 증가가 상당함을 보여준다([그림 IV-4], [그림 IV-5]).

[그림 IV-4] 소득수준별 실효한계세율(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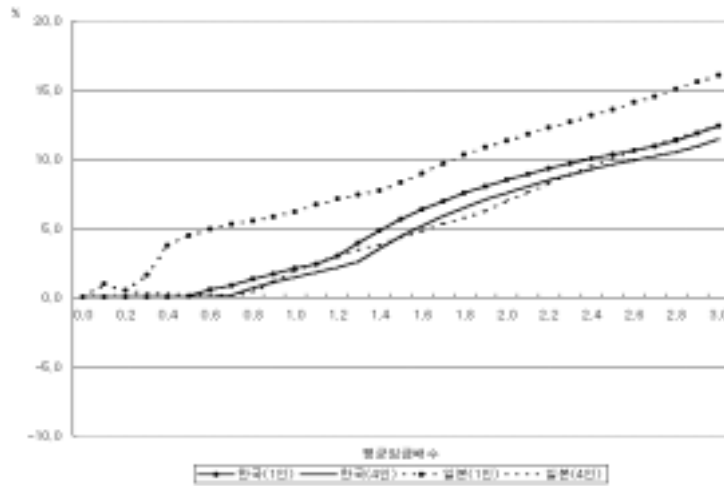
[그림 IV-5] 소득수준별 실효한계세율(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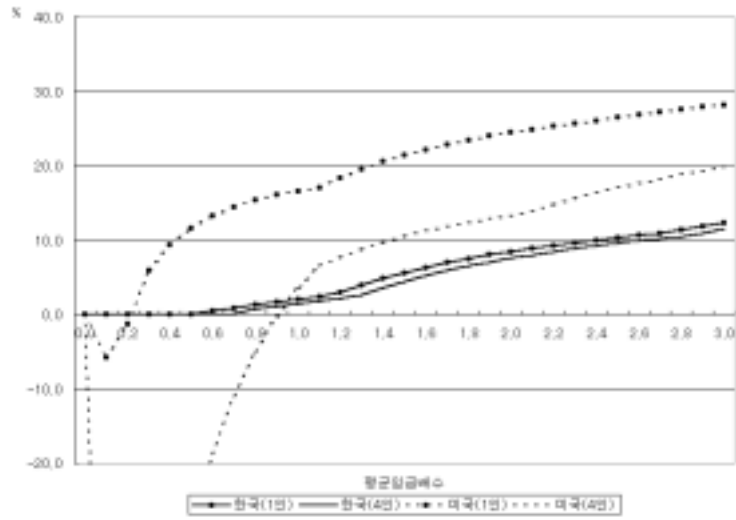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95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필요소득 측면의 소득세적 고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 IV-6]에 따르면 평균소득 이상인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실효평균세율 차이는 일본의 경우 평균 4%포인트에 달하여 실제적인 세부담 변화가 69~22%에 이르나 우리나라는 31~7% 수준에 불과해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고려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실효평균세율의 상대적 비탄력성은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소가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낮은 출산율이 향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등장할 것임에 따라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소득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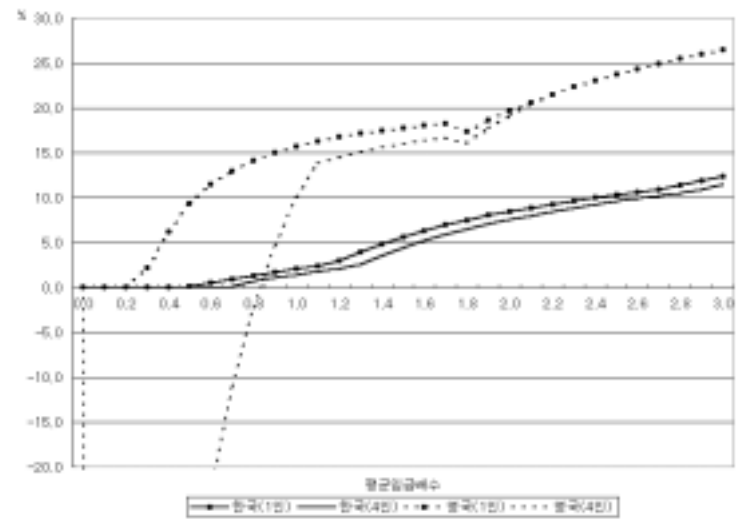
[그림 IV-6] 가구원수별 실효평균세율 비교(일본)



[그림 IV-7] 가구원수별 실효평균세율 비교(미국)



[그림 IV-8] 가구원수별 실효평균세율 비교(영국)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97

<표 IV-6>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실효평균세율 변화

(단위: %)

	소득수준(평균소득대비 배수)					
	0.5	1.0	1.5	2.0	2.5	3.0
한국						
1인가구(A)	0.1	2.0	5.6	8.4	10.3	12.4
4인가구(B)	0.0	1.4	4.4	7.5	9.6	11.4
차이(C=A-B)	0.1	0.6	1.2	0.9	0.7	0.9
변화율(C/A)	100.0	31.3	21.7	10.8	7.1	7.4
일본						
1인가구(A)	4.4	6.2	8.3	11.3	13.6	16.1
4인가구(B)	0.2	1.9	4.3	6.9	10.0	12.5
차이(A-B)	4.2	4.3	4.0	4.4	3.6	3.6
변화율(C/A)	95.7	69.4	48.0	38.9	26.2	22.4

다. 시사점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연금부담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조세부담(혹은 국민부담률)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세목간의 상대적 역할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근로소득세 제도측면에서는 면세점 수준, 누진구조, 가구원 수에 따른 필요경비 고려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면세자를 확대하는 정책(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넓은 세 원이라는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동 공제제도 확대의 목적인 중하위소득자의 보호측면에도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자들의 하위 44.2%가 면세자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적인 공제제도 변화로 인한 저소득층 보호효과는 전무하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과 실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가구원

당 소득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여 근로자 소득에 기준한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하위계층에 대한 세제적 지원은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가구당 필요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나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와 같은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세액공제제도 도입이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인가구에 나타나는 높은 면세점 수준은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의 축소조정을 통해 낮추어 줄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역할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와의 소득과약물 차이 보정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목적과 연계될 수 있는 각종 공제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상대적 역할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양성화율 개선 추이 등 제도도입 목적과 소득세체계의 역할 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상위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실효평균세율의 급격한 증가는 근로자들의 조세제도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불만은 실제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중하위계층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누진구조의 개선은 중상위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편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수준이 물가 등에 따라 연동되어 조정되지 않는 점은 근로소득세의 체감증가율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누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공제율의 조정과 과세표준 구간의 물가연동 등을 통해 중상위소득계층에 나타나는 높은 실효세율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비하여 과세소득 누락이 거의 없고 또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해 소득 수령시 소득세액을 조기납부하게 되므로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동 제도는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갑종근로소득자²⁵⁾(일용근로자 포함)에게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자²⁶⁾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5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5%, 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로 하고 있다. 다만 공제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인한 혜택(세액감소)은 동 제도와 관계없이 면세점인 근로소득 1,523.5만원(이하 4인가구 기준²⁷⁾) 이하 소득자에게는 없다. 면세소득 수준 이상 근로소득 2,819.9만원(혹은 과세표준 1,101.9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공제가 증가하여 세후임금의 상승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구간을 점증구간(Phase-in range)이라 한다. 점증구간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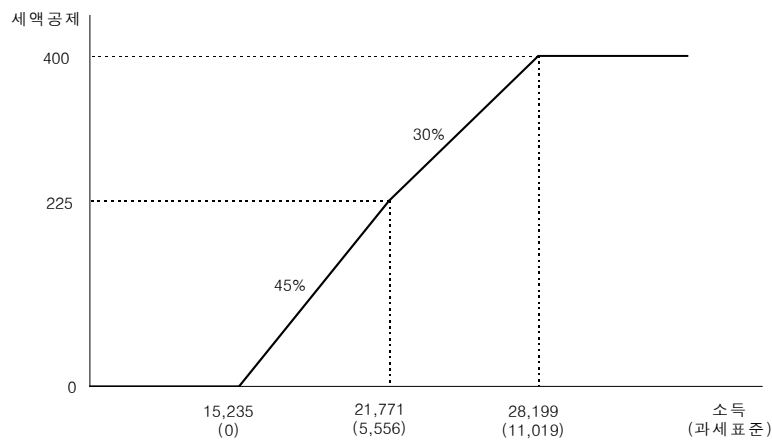
25) 세법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뉜다.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6) 을종근로소득은 1)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2)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27) 4인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임.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근로소득 1,523.5~2,177.1만원의 계층에 대해서는 45%로 소득세율이 3.4%포인트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근로소득 2,177.1~2,819.9만원의 계층에는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어 소득세율이 2.7%포인트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근로소득이 2,819.9만원(혹은 과세표준 1,101.9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그 상한선인 40만원에 도달하게 되므로 공제세액은 4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구간을 고원구간(Plateau range)이라 한다. 동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정액(40만원)의 이전소득 역할을 하므로 근로자의 세후임금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IV-9]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었는데 그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1~1992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용되었으며 공제율도 20%로 단일화되어 있었다. 동 제도는 1993년 모든 근로소득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96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101

목적으로 세율구조가 2단계로 분리되었다. 2002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축소조정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세액공제제도로 인한 혜택이 중산층 이하 계층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표 IV-7>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변천

	1991~1992	1993~1995	1996	1997~2001	2002~현재
세액공제율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의 20%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20%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한도	5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40만원
적용 대상	연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전 근로소득자	전 근로소득자	전 근로소득자	전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제적 영향은 크게 근로자 가처분소득의 변화, 정부 예산비용, 그리고 근로자 후생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자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세액공제로 인한 직접적 소득증가분과 세액공제로 인한 임금(혹은 소득²⁸) 변화가 초래하는 간접적인 소득증가분(혹은 감소분²⁹)의 합이다. 세액공제로 인한 정부 예산비용 또한 직접적인 세액공제로 인한 비용과 세액공제로 인한 노동공급 행태변화가 초래하는 간접적 효과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로자 후생변화는 기존의 소득세가 야기하는 경제적 왜곡정도(근로자 후생의 감소)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감소하는 것을 추정한 것이다.

28) 소득에 대한 세액이 세액공제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실질임금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실질임금률의 변화는 없는 반면 실질소득을 세액공제한도만큼 증가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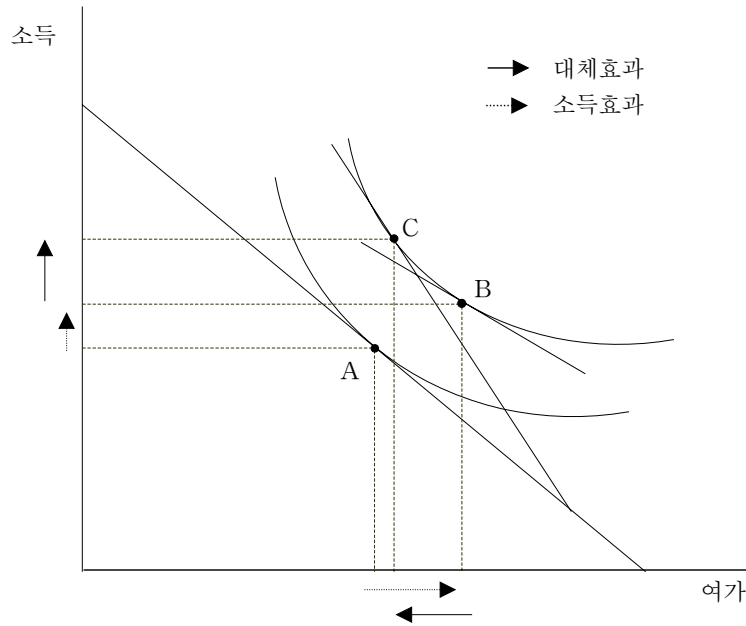
29) 임금(혹은 소득)의 변화는 근로자의 노동공급결정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을 변화시킴.

가. 근로자 가처분소득의 변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동 제도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선 근로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같이 증가하는 점증구간(Phase-in region)은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임금의 상승은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를 통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한편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통해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점증구간에 있어 세액공제의 노동공급에의 영향은 이러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세액공제가 상한선인 40만원에 도달한 고원구간(Plateau region)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증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세액공제제도는 임금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세액공제상한선만큼의 소득증가 효과만 있다. 이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게 된다.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점증구간에서 노동공급이 아닌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공급과 다르게 나타난다. 여가와 소득을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로 가정할 경우 음의 소득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액공제제도는 소득효과를 통해 여가와 소득을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대체효과는 여가수요를 감소(노동공급의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나 가처분소득은 이로 인한 소득감소분보다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소득증가분이 더 커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점증구간에서 세액공제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그림 IV-10] 참조).

[그림 IV-10]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인한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에의 영향



점증구간에서의 근로자 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다.

$$Y_D = Y - t(1-m)(Y - ID) - t'Y$$

$$= (1-t-t')Y + tm(Y-ID) + tID$$

단, Y: 근로소득, Y_D: 가처분소득, t: 소득세율, t': 기타세율
m: 근로소득세액공제율, ID: 소득공제

이때 첫 번째 항목은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없을 경우의 가처분소득이며 두 번째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이다. 마지막 항목은 소득공제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이다. 따라서 점증구간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의 변화로 인한 근로자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Y_D = t(Y-ID)dm + (1-t-t'+tm)dY$$

첫 번째 항목은 근로수입을 기초로 세액공제율의 변화로 인해 환급되는 소득세액이며 이는 과세표준($Y-ID$)에 세율과 세액공제율의 변화를 곱한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항목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분소득의 변화이다.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변화는 임금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한 것으로 두 효과 모두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가치분소득의 변화는 임금변화로 초래되는 소득변화에 $(1-실효세율)$ 을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도도입으로 인한 임금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세 이외의 다른 조세수준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세액공제제도로 인한 조세부담의 변화가 소득세율뿐만 아니라 가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소득세 이외의 조세부담률은 총소비에 대한 주요 간접세, 관세 및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각출요율의 합으로 설정하였다. 고려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로 2002년 총소비에 대한 비중은 9.14%로 나타났으며 관세의 비중은 1.57%,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등은 6.815%로 소득세 이외의 조세부담은 17.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손광락(1999)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각종 보험료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시켜 공제제도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변화를 실제보다 과다추정하였다³⁰⁾.

30)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자 부담분의 포함여부는 근로자와 정부부분에 상반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고용자 부담분의 제외는 우선 근로자의 노동공급에의 영향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타 조세부담률을 낮춰 정부의 재정수입은 과소평가하게 된다. 반면 동부분을 포함할 경우 노동공급에의 영향이 과대평가되어 결과적으로 적절한 조세부담률을 적용하더라도 정부수입에의 영향(가격효과×환

계세율)은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동 연구의 목적이 제도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의 영향(대체효과)을 적절히 반영하고 제도도입의 비용 대비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고용자 부담분을 기타조세에서 제외하였다.

<표 IV-8>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이외의 조세

	2001년	2002년
간접세	8.33	9.14
관세	1.55	1.57
국민연금	4.50	4.50
건강보험, 고용보험	2.20	2.315
합계	9.88	17.52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간접적인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금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보상임금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불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연구에 기초한 보상임금탄력성 0.3, 소득탄력성 -0.2를 이용하였다³¹⁾. 이러한 가정으로 살펴볼 때 노동공급의 비보상임금탄력성은 0.1로 임금상승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을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자, 과세표준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자료를 이용하였다. 2002년 귀속연도 과세자료 이용의 어려움으로 2001년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소득계층별 평균근로소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외에 특별공제(혹은 표준공제),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는 특별공제와 조

31) 이 수치는 Hansson and Stuart(1985)의 노동공급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Pencavel(1986)과 Killingsworth and Heckman(1986)도 이 수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 연구에 의한 성별 탄성치의 가중평균(여성의 가중치는 3분의 1로 총급여 중 여성의 비중과 유사)은 0.33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과 유사하다. Browning(1995), 김근중(1997), 손광락(1999)은 동 수치를 이용하였다.

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공제제도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기본적인 인적공제에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본 분석이 4인가구 기준으로 하고 이러한 가구의 공제특성을 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추가공제에는 장애인공제·경로우대자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있으나 동 항목들은 4인가구의 일반적 공제형태로 보기 힘들어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소득공제의 수준은 4인가족에 인적공제 400만원, 특별공제와 기타 소득공제가 170만원으로 총 570만원으로 설정되었다. 특별공제의 경우 2001년 총 43.7만명이 7,380억원을 신청하여 평균 169만원에 달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액 3,884억원을 종합소득확정신고자 수인 1,037만명에 대해 적용하면 평균 3.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가지 공제제도의 합은 172.7만원이나 본 분석에서는 편의상 170만원으로 가정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세통계연보상 4단계로 주어진 과세표준계급을 6단계로 세분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이 변하는 시점과 공제금액의 상한선 전후의 효과분석을 위한 것이다. 근로소득 2,177.1만원은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변하는 시점(45%→30%)이며 2,819.9만원은 세액공제 한도인 40만원에 도달하는 소득수준이다.

각 과세표준계급별 인원과 일인당 과표, 근로소득의 추정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나 국세통계연보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과세표준계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일인당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4인가구를 바탕으로 일인당 과표를 산출하였다. 세분화된 근로소득구간별 인원분포는 기본적

으로 도시가계연보의 인원분포를 이용하였으며 이 때 나타나는 국세통계연보상의 총 과세표준과 세분화된 과세표준의 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분포의 미세조정을 통해 제거하였다.

<표 IV-9> 과세표준계급별 1인당 과표, 소득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계급	근로소득구간	인원	1인당 과표	1인당 근로소득	세율	산출세액	근소세액 공제
0~10,000	15,235~27,000	4,236	3,489	21,771	0.09	314.0	141.3
(~5,556)	(~21,771)	3,473	2,570	18,259	0.09	231.3	104.1
(~10,000)	(~27,000)	763	7,673	24,263	0.09	690.6	282.2
10,000~40,000	27,000~59,684	2,079	18,225	30,000	0.18	2,380.5	400.0
(~11,019)	(~28,199)	275	10,526	27,619	0.18	994.7	373.4
(~40,000)	(~59,684)	1,804	19,397	37,607	0.18	2,591.4	400.0
40,000~80,000	59,684~101,790	110	52,262	72,592	0.27	9,610.8	400.0
80,000~	101,790~	21	158,940	184,884	0.36	45,518.3	400.0
평 균				26,254			225.5

주: 5,556은 세액공제율이 변하는 시점, 11,019는 공제적용 상한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IV-10>과 같다. 임금변화율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세후 소득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세후임금의 변화(과세구간변화폭+세액공제율×한계소득세율)를 세후임금률(1-소득세율-기타세율)로 나누어 준 것이다.

$$\text{임금변화율} = \frac{(\text{과세구간변화폭} + \text{세액공제율} \times \text{한계소득세율})}{(\text{세후임금률})} \times 100$$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109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계급 0~555.6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임금변화율은 5.04%로 추정된다. 이러한 세후임금의 변화는 세액공제율과 개인의 한계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세액공제율이 일정하면서 한계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과세표준 1천만원 이상의 경우(555.6만~1천만원)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변화율을 보여준다. 이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최하위 두 계층보다 세 번째 계층에 보다 높은 근로유인효과를 지님을 보여준다.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대체효과는 세액공제로 인한 소득변화(일인당 근로소득×임금변화)에 노동공급의 보상임금탄력성(0.3)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다.

$$\text{대체효과} = \text{근로소득} \times \text{임금변화율} \times \text{노동공급의 보상임금탄력성}$$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가 직면하는 소득과 여가의 상대가격이 세액공제로 인해 변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춰 소득과 여가의 비율이 조정되는 데 기인한 것이다. 소득구간별 대체효과는 세후임금률이 변하는 과세표준 1,101.9만원(근로소득 2,819.9만원) 이하에서만 나타나며 그 이상의 소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과 여가의 상대가격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세후소득을 세액공제액만큼 증가시키는데 이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효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노동공급의 소득탄력성(-0.2)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효과는 세액공제가 늘어날수록 증가하게 된다.

$$\text{소득효과} = \text{근로소득세액공제} \times \text{소득탄력성}$$

각 소득구간별 한계세율은 (한계소득세율×(1-세액공제율)+소득세 이외의 세율)로 나타나며 산출된 가격효과(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로 인한 실질적인 세후소득에의 영향은 가격효과에 (1-한계세율)을 곱하여 줌으로써 도출된다.

나. 정부 예산비용의 변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인한 정부 예산비용의 변화는 세액공제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감소와 가격효과(대체효과·소득효과)로 인한 간접적인 정부수입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감소는 세액공제금액으로 최대 45만원(근로소득 2,819.9만원 이상)에 이른다. 간접적인 영향은 세후임금률의 변화로 인한 가격효과가 초래하는 정부수입의 증가와 이러한 가격효과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비용을 합한 것이다. 우선 가격효과가 초래하는 정부수입의 증가분은 소득의 증가분(가격효과)에 정부수입을 결정하는 세율, 즉 (한계소득세율+기타세율)을 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소득증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가격효과에 한계소득세율과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줌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text{정부수입변화} = \text{가격효과} \times (\text{한계소득세율} + \text{기타세율})$$

$$\text{세액공제변화} = \text{가격효과} \times \text{한계소득세율} \times \text{세액공제율}$$

이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가격효과로 인해 소득이 변화하지만 세액공제로 인한 정부의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 이는 일정소득 이상 근로자계층의 경우 근로소득증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상한선의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다.

가격효과로 인한 정부수입변화를 살펴보면 가격효과가 가장 높은 과세표준 1천만~1,101.9만원 구간에서 가장 높은 22.0만원의 정부수입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소득효과만 존재하는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가격효과로 인해 정부수입이 2.8만~4.3만원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변화는 소득이 세액공제 상한선에 미달하는 근로자계층에 나타나는데 그 크기는 소득계층에 따라 0.6만~3.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해 나타나는 직간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정부의 예산비용은 대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인 일인당 예산비용은 18.6만원으로 나타났다.

$$\text{예산비용} = \text{근소세액공제} - \text{정부수입변화} + \text{세액공제변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예산비용과 동 제도로 인한 근로자 가처분소득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공제가 증가하는 과세표준 1,101.9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예산비용보다 높은 가처분소득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액공제한도를 넘는 소득자들은 가처분소득 증가분보다 정부의 예산비용이 높았다. 평균적으로 예산 1원당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2.0원(=365.1/186.3)으로 제도가 요구하는 비용보다 가처분소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계급	1인당 근로소득	인원	근소세액 공제	가격효과	정부수입 변화	세액공제 변화	예산비용	가처분 소득변화
0~5,556	18,259	3,473	104.1	281.1	74.5	11.4	40.9	322.0
5,556~10,000	24,263	763	282.2	211.0	56.0	5.7	231.9	442.9
10,000~11,019	27,619	275	373.4	619.2	219.9	33.4	186.9	806.1
11,019~40,000	37,607	1,804	400.0	-80.0	-28.4	0.0	428.4	348.4
40,000~80,000	72,592	110	400.0	-80.0	-35.6	0.0	435.6	355.6
80,000~	184,884	21	400.0	-80.0	-42.8	0.0	442.8	362.8
평 균	26,254		225.5				186.3	365.1

다. 근로자후생의 변화

근로자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인한 금전적 수입의 변화로 근로자후생의 측정은 아니다. 근로자의 후생은

이러한 금전적 수입의 변화와 함께 근로소득세율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초과부담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현재 근로소득세 부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왜곡에 따른 비용(근로자의 후생감소)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인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이전의 금전적 비용에 더할 때 진정한 근로자후생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왜곡축소에 따른 후생효과는 제도시행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만약 제도시행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소비세 등 다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소득세와 대체세목간의 상대적 시장왜곡정도의 차이만큼 초과부담이 변화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부담의 변화효과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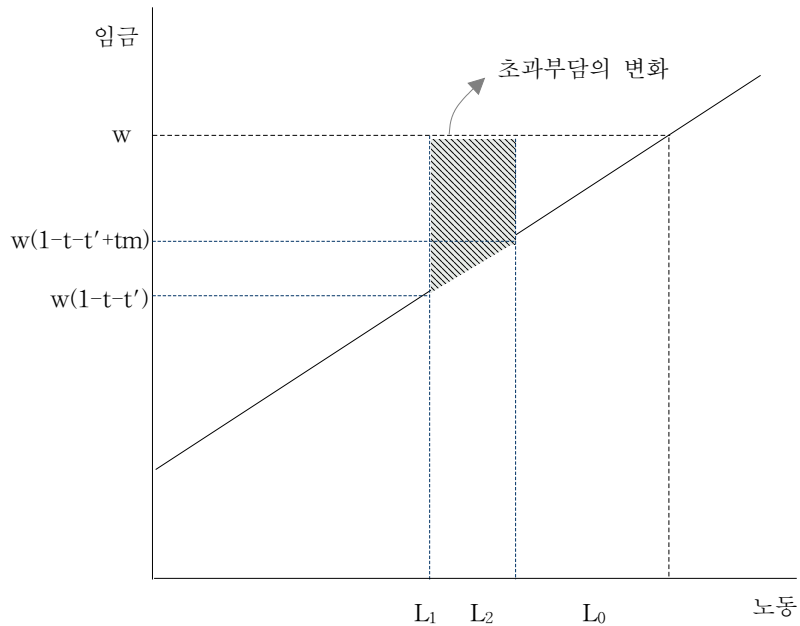
근로소득세 변화로 인한 근로자 초과부담의 변화는 한계소득세율이 변하게 되는 과세표준 1,101.9만원(근로소득 2,819.9만원) 이하의 계층에만 나타나게 된다.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정액의 이전소득의 역할을 하므로 세후 임금률의 변화에 의존하는 초과부담의 변화는 없게 된다.

한계소득세율이 낮아짐에 따른 근로자의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즉 이전의 한계소득세율에 의한 노동공급의 왜곡현상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이때 변화하는 근로자의 초과부담은 제도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임금과 실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누리는 효용(노동공급 곡선의 아랫부분)의 차이가 된다.

$$\text{초과부담} = -(\text{한계소득세율} + \text{기타세율} - 0.5 \times \text{세액공제율} \times \text{한계소득세율}) \times \text{대체효과}$$

마이너스 부호는 노동시장의 왜곡감소에 따라 초과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실질소득세율의 인하로 인한 초과부담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과세표준 1천만~1,101.9만원 구간에서 가장 높은 22.8만원의 후생증가를 보여준다.

[그림 IV-1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인한 초과부담의 변화



이러한 근로자후생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총 편익은 이전의 정부예산비용(즉 근로자의 편익)에 후생변화를 차감해 줌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의 근로자 편익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수준은 24.4만원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근로자편익의 증가는 대체효과의 크기에 기인하는 것이며 초과부담의 변화로 소득수준별 상대적 차이는 대체효과에 비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증가에 따라 세액감면이 증가하는 소득계층에 있어서 예산 1원당 편익이 1.29~2.81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액공제한도액만큼의 단순 소득증가를 유발하는 과세표준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115

1,101.9만원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초과부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동 제도의 비용과 편익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예산 1원당 편익은 1.31원으로 나타나 동 제도운영으로 사회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비용과 편익

(단위: 천원, 천명)

과세표준계급	1인당 근로소득	인원	예산비용	대체효과	초과부담	편익	예산 1원당 편익(원)
0~5,556	18,259	3,473	40.9	301.9	-74.0	114.9	2.81
5,556~10,000	24,263	763	231.9	267.5	-67.3	299.2	1.29
10,000~11,019	27,619	275	186.9	693.9	-227.7	414.7	2.22
11,019~40,000	37,607	1,804	428.4	0.0	0.0	428.4	1.00
40,000~80,000	72,592	110	435.6	0.0	0.0	435.6	1.00
80,000~	184,884	21	442.8	0.0	0.0	442.8	1.00
평 균	26,254		186.3			243.8	1.31

주: 초과부담 = -대체효과×(총세율 - 0.5×세액공제율×적용세율)

3.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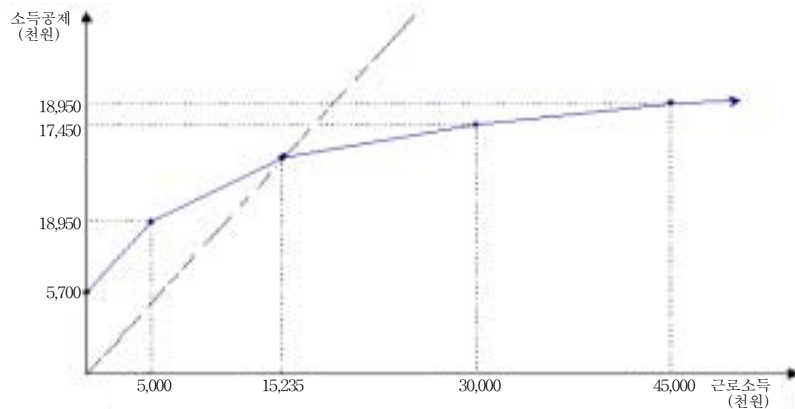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공제제도는 실액공제제도와 개산공제제도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인 반면 개산공제제도는 실제필요경비에 관계없이 급여액의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와 같이 개별적인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곤란하고 개별적인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라도 이의 확인을 위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어 편익에 비해 비용이 큰 단점이 있다.

소득세법은 개산공제제도인 근로소득공제만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상의 특별공제를 통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필요경비적 지출로 공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소득자에 비해 과표의 포착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5~45%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4인가구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570만원을 고려할 경우 근로소득이 1,523.5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산식에 의한 소득공제액이 소득액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소득액이 소득공제액이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낮아져 4,500만원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그림 IV-12] 근로소득공제제도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2001년 이전까지 필요경비적공제의 성격을 많이 내포해 왔다. 즉 소득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100%와 30%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동시에 공제한도를 부과하여 근로행위를 위한 필요경비를 일정수준 공제한 의미가 있었다.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117

그러나 2001년 소득세법 개정시 근로소득의 공제한도를 철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공제율을 적용해 기존의 필요경비적공제의 성격보다 사업소득자들의 과세형평성 개선에 대한 고려가 높았다.

<표 IV-13>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천

	1991~1992	1993	1994	1995	1996	1997~2001	2002~2003
소득공제율	~230:100% 230~: 30%	~250: 100% 250~: 30%	~270: 100% 270~: 30%	~310: 100% 310~: 30%	~400: 100% 400~: 30%	~500: 100% 500~: 30%	~500: 100% 500~1500: 45% 1500~3000:15% 3000~4500:10% 4500~ : 5%
공제한도	490만원	600만원	620만원	690만원	800만원	900만원	없음
적용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의 효과분석을 위해 근로소득 구간설정은 다음의 <표 IV-14>와 같이 가정하였다. 기본적으로 동 제도의 유무시 소득공제율과 한계소득세율이 변하는 시점이 분석구간으로 설정되었다.

<표 IV-14> 근로소득공제제도 효과분석을 위한 구간설정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없을 때		근로소득공제가 있을 때		
소득(천원)	한계세율(%)	소득(천원)	한계세율(%)	공제율(%)
-5,700	0	-5,700 (0)	0	0
-15,700 (10,000)	9	-15,235 (0)	0	15
		-15,700 (395)	9	15
-45,700 (40,000)	18	-27,000 (10,000)	9	15
		-30,000 (12,550)	18	15
		-45,000 (26,050)	18	10
		-45,700 (26,715)	18	5
-85,700 (80,000)	27	59,684 (40,000)	18	5
		-85,700 (64,715)	27	5
+85,700	36	-101,790 (80,000)	27	5
		+101,790	36	5

주어진 근로소득구간에 대한 인원 및 평균소득은 다음의 <표 IV-15>와 같다. 근로소득구간 구분을 위해 앞서와 같이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각 근로소득구간의 평균적인 일인당 소득을 구한 다음 과표를 산출하였다. 각 근로소득구간별 인원분포는 국세통계연보상의 과세표준 합계를 만족할 수 있도록 도시가계연보의 인원분포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공제한도가 철폐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소득공제액의 변화로 인한 감세혜택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한 세액의 차이로 구해질 수 있다. 각 근로소득구간별 감세혜택의 규모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43.7만~728.8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적인 혜택의 규모는 일인당 112.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V-15> 근로소득 구간별 1인당 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의 감세혜택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계급	근로소득구간	인원	1인당 과표	1인당 근로소득	세율	근소공제	감세혜택
면세점 이하	0~5,700	424	0	3,887	0	0	0
면세점 이하	5,700~15,235	4,685	0	10,557	0	7,501	437
0~395	15,235~15,700	255	195	15,465	9	9,570	861
395~10,000	15,700~27,000	3,981	4,563	20,604	9	10,341	1,372
10,000~12,550	27,000~30,000	493	11,178	28,388	18	11,508	2,072
12,550~26,050	30,000~45,000	1,316	18,456	36,562	18	12,406	2,233
26,050~26,715	45,000~45,700	13	26,414	45,386	18	13,269	2,389
26,715~40,000	45,700~59,684	256	30,643	49,835	18	13,492	2,801
40,000~64,715	59,684~85,700	103	51,174	71,446	27	14,573	3,934
64,715~80,000	85,700~101,790	7	67,494	88,625	27	15,446	4,430
80,000~	101,790~	21	158,940	184,884	36	20,244	7,288
평 균				19,424			1,12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근로자가 직면하는 임금률의 변화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임금변화율은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한계소득세율이 변하는 구간에서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근로소득 570만~1,523.5만원 구간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유무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0%에서 9%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의 과표감소 효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듯 한계소득세율이 변하는 과세표준 구간들의 임금변화율은 면세점 이하(근로소득 570만~1,523.5만원) 구간 12.3%, 39.5만~1천만원(근로소득 1,570만~2,700만원)구간 16.1%, 2,671.5만~4천만원(근로소득 4,570만~5,968.4만원)구간 17.8%, 그리고 6,471.5만~8천만원(근로소득 8,570만~10,179만원)구간 22.3%로 그렇지 않은 구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동 구간의 임금변화율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후소득률 대비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세율변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세후소득세율이 변화하는 구간을 제외한 타 구간의 임금변화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4~3.9%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변화율은 한계소득세율과 근로소득공제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득수준과 특별한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높은 임금변화율은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과세표준 8천만원(근로소득 10,179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나타난다.

일인당 근로소득과 임금변화율, 그리고 보상임금탄력성의 곱으로 표현되는 대체효과는 근로자가 직면하는 소득과 여가의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즉 근로소득)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대체효과는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세후임금률 상승으로 항상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동 효과의 규모는 임금변화율이 가장 큰 과세표준 6,471.5만~8천만원(근로소득 8,570만~1억 179만원) 구간에서 59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세표준 0~39.5만원(근로소득 1,523.5만~1,570만원) 구간에서 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나타나는 직접적인 감세효과는 근로자의 세

후소득을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직접적인 감세액에 소득탄력성을 곱한 소득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감세액이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고소득층일수록 그 절대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여가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망라한 가격효과는 두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총 가격효과는 대체적으로 한계소득세율이 근로소득공제로 변화하는 구간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다. 예외적인 경우로 한계소득세율이 변하지 않는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혹은 근로소득 10,179만원 이상) 계층에서 양의 소득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소득공제가 한계소득세율을 변화시켜 큰 대체효과를 야기하지 않는 한 소득효과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가격효과가 유발하는 세후소득의 변화(가격효과 영향 항목)는 한계소득세율 변화를 동반하는 소득구간과 최고소득구간을 제외하고 음의 소득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음의 소득변화 효과는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효과가 노동유인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효과에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직접적 감세혜택을 더한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소득계층별 가격효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감세혜택으로 인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 또한 대체적으로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증가가 평균적인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혹은 근로소득 10,179만원 이상)의 최고소득 계층에서 4.1% (=7,621.2/184,884)로 가장 낮았으며 과세표준 39.5만~1천만원(혹은 근로소득 1,570만~2,700만원) 계층에서 9.3%(=1,909.3/20,60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 증가의 비중이 근로소득수준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한편 절대액의 증가규모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121

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와 달리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소득분배에 역진적이었다.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근로자의 평균적인 가처분소득 증가는 일인당 143.1만원으로 평균 근로소득의 7.4% 수준으로 나타나 상당한 가처분소득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계급	1인당 근로소득	감세 혜택	임금 변화율 dw/w	가격효과			1-한계 세율	가격효과 영향	가처분 소득변화
				대체효과	소득효과	소계			
면세점 이하	3,887	0	0.0	0.0	0.0	0.0	0.825	0.0	0.0
면세점 이하	10,557	437	12.3	387.9	-87.4	300.5	0.825	238.9	685.0
0~395	15,465	861	1.8	85.2	-172.3	-87.0	0.748	-77.0	796.2
395~10,000	20,604	1,372	16.1	992.2	-274.4	717.8	0.748	508.6	1,909.3
10,000~12,550	28,388	2,072	4.2	356.6	-414.4	-57.8	0.672	-68.0	2,033.0
12,550~26,050	36,562	2,233	2.8	306.2	-446.6	-140.4	0.663	-124.0	2,140.0
26,050~26,715	45,386	2,389	1.4	190.0	-477.8	-287.7	0.654	-220.8	2,200.7
26,715~40,000	49,835	2,801	17.8	2,667.8	-560.1	2,107.7	0.654	1,310.9	4,178.6
40,000~64,715	71,446	3,934	2.4	521.5	-786.9	-265.3	0.568	-205.2	3,783.6
64,715~80,000	88,625	4,430	22.3	5,920.4	-885.9	5,034.5	0.568	2,729.2	7,290.7
80,000~	184,884	7,288	3.9	2,148.0	-1,457.6	690.4	0.483	229.0	7,621.2
평 균	19,424	1,128							1,430.9

가격효과로 인한 정부수입에의 영향은 근로소득 변화가 초래하는 근로소득세 및 기타세수입의 차이로 이는 가격효과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각 소득구간별 한계소득세율과 기타세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 6,471.5만~8천만원(혹은 근로소득 8,570만~10,179만원)구간에서 가장 높은 224.1만원 수준이며 과세표준 4천만~6,471.5만원(혹은 근로소득 5,968.4만~8,570만원) 구간에서 가장 낮은 -11.8만원의 효과를 보여준다.

가격효과로 인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화까지 고려한 정부의 예산비용은 대체적으로 소득에 따라 증가하며 일인당 평균 107.1만원

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적인 가치분소득의 증가와 비교해 볼 때 예산 1원당 가치분소득증가는 평균 1.33원으로 나타나 단순한 소득이전보다 가치분소득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의 효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평균적인 가치분소득 증가 2.0원보다 낮아 상대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천명, %)

과표구간	1인당 근로소득	인원	감세혜택	가격효과	정부수입 변화	근소공제 변화	예산비용	가치분 소득변화
면세점 이하	3,887	424	0	0.0	0.0	0.0	0.0	0.0
면세점 이하	10,557	4,685	437	300.5	52.6	27.0	411.6	685.0
0~395	15,465	255	861	-87.0	-23.1	-1.2	883.2	796.2
395~10,000	20,604	3,981	1,372	717.8	190.3	74.3	1,256.1	1,909.3
10,000~12,550	28,388	493	2,072	-57.8	-20.5	-1.6	2,090.8	2,033.0
12,550~26,050	36,562	1,316	2,233	-140.4	-49.9	-2.5	2,280.5	2,140.0
26,050~26,715	45,386	13	2,389	-287.7	-102.2	-2.6	2,488.4	2,200.7
26,715~40,000	49,835	256	2,801	2,107.7	748.6	208.7	2,260.7	4,178.6
40,000~64,715	71,446	103	3,934	-265.3	-118.1	-3.6	4,049.0	3,783.6
64,715~80,000	88,625	7	4,430	5,034.5	2,241.3	521.1	2,709.3	7,290.7
80,000~	184,884	21	7,288	690.4	369.5	12.4	6,930.8	7,621.2
평균	19,424		1,128				1,071.4	1,430.9

한계소득세율 인하로 나타나는 근로자후생의 변화를 반영하는 초과부담은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한계소득세율의 변화폭에 비례한다. 모든 소득구간에서 한계소득세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지니므로 소득세의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왜곡현상은 감소하게 되어 초과부담의 변화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초과부담의 변화는 소득구간에 따라 -2.2만~-259.6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123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근로자의 총 편익은 직접적인 편익인 정부의 예산비용에 노동공급증대에 따른 근로자의 후생증가 부분(초과부담 감소분)의 합으로 나타난다. 예산비용에 비해 초과부담분의 변화는 그 규모가 작아 전체적인 근로자의 편익은 예산비용 구조와 유사하게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증가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편익의 편차는 16.8배(=8,061.1/47.9)로 평균 근로소득의 편차 17.5배(=184,884/10,557)보다 낮아져 근로소득공제제도가 분배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예산비용과 총 근로자편익을 비교한 예산 1원당 편익은 소득수준에 따라 1.02~1.96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1.15원의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편익비율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평균편익 1.31원의 약 88% 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인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비용과 편익

(단위: 천원, 천명, %)

과표구간	1인당 근로소득	인원	예산비용	대체효과	초과부담	편익	예산1원당 편익(원)
면세점 이하	3,887	424	0.0	0.0	0.0	0.0	0.00
면세점 이하	10,557	4,685	411.6	387.9	-68.0	479.5	1.17
0~395	15,465	255	883.2	85.2	-22.0	905.2	1.02
395~10,000	20,604	3,981	1,256.1	992.2	-256.4	1,512.5	1.20
10,000~12,550	28,388	493	2,090.8	356.6	-121.9	2,212.6	1.06
12,550~26,050	36,562	1,316	2,280.5	306.2	-106.0	2,386.5	1.05
26,050~26,715	45,386	13	2,488.4	190.0	-66.6	2,555.1	1.03
26,715~40,000	49,835	256	2,260.7	2,667.8	-935.6	3,196.2	1.41
40,000~64,715	71,446	103	4,049.0	521.5	-228.7	4,277.6	1.06
64,715~80,000	88,625	7	2,709.3	5,920.4	-2,595.8	5,305.1	1.96
80,000~	184,884	21	6,930.8	2,148.0	-1,130.3	8,061.1	1.16
평 균	19,424		1,071.4			1,231.6	1.15

4.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종합적 효과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개별적 분석에 이어 본 절에서는 두 가지 제도로 인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효과의 분석은 비록 예산비용 대비 편익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외의 다른 지표 즉 소득재분배 기능 등 향후 제도 개편시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다른 근거의 비교를 위해서

<표 IV-19>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 효과분석을 위한 구간설정
(단위: 천원)

인적공제만 허용		근로소득공제 허용			근로소득 세액공제 허용
소득(과세표준)	한계세율(%)	소득(과세표준)	한계세율(%)	공제율(%)	한계세액공제율(%)
-5,700 (0)	0	-5,700 (0)	0	0	0
-15,700 (10,000)	9	-15,235 (0)	0	15	0
		-15,700 (395)	9	15	45
-45,700 (40,000)	18	-27,000 (10,000)	9	15	45
		-21,771 (5,556)	9	15	30
		-28,199 (11,019)	9	15	30
		-30,000 (12,550)	18	15	0
		-45,000 (26,050)	18	10	0
		-45,700 (26,715)	18	5	0
-85,700 (80,000)	27	59,684 (40,000)	18	5	0
		-85,700 (64,715)	27	5	0
+85,700	36	-101,790 (80,000)	27	5	0
		+101,790	36	5	0

필요하다. 또한 제도운영의 행정비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와 행정비용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종합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근로소득구간은 앞 절의 근로소득 공제 구간에 세액공제의 도입과 공제율변화, 공제상한을 고려하기 위하여 두 구간이 추가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즉 세액공제율이 변하는 과세표준 39.5만~555.6만원(혹은 근로소득 1,570만~2,177만원) 구간과 세액공제 한도액에 달하는 과세표준 1천만~1,102만원(혹은 근로소득 2,700만~2,820만원) 구간이 추가되었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로 인한 감세혜택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12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수준별 실효세율 감소율(감세혜택/소득)은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연간 소득 2,500만~3천만원 소득구간에서 그 효과가 가장 높아 8~9%의 실효세율 감소효과를 보여주며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1억 2천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그 효과가 5%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다. 개별 공제제도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또한 유사하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공제제도 자체가 소득재분배효과를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임금변화율은 공제제도로 인해 한계세율이 변하는 구간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전의 근로소득공제제도와의 차이는 중하위계층에 집중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효과로 인해 과세표준 39.5만~555.6만원(혹은 근로소득 1,570만~2,177만원)구간에서 가장 높은 22.3%의 변화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동 소득계층에 속하는 노동의 공급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한편 임금을 변화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평균 161.5만원 수준으로 개인소득의 8.5%(1,615천원/19,085천원) 수준이다. 소득수준별 분포는 세율인하 효과와 비슷하게 근로소득 2,500만~3천만원 구간에서 11% 내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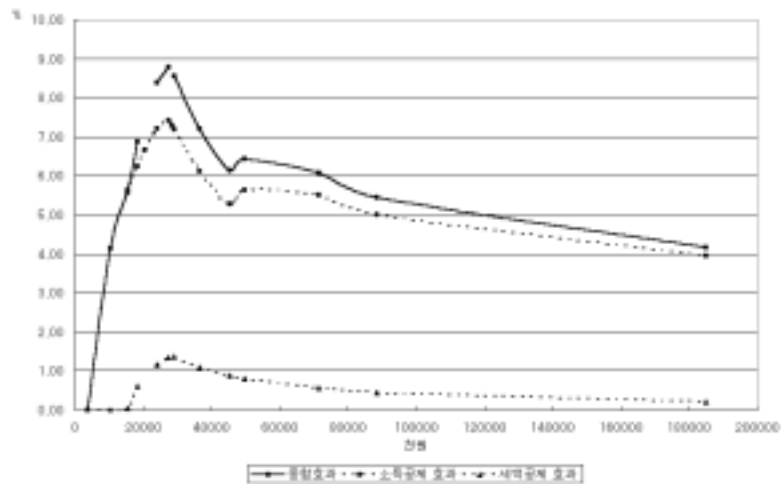
가장 높은 가처분소득 변화를 보였다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준다.

<표 IV-20> 근로소득 구간별 1인당 소득 및 감세혜택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	근로소득구간	인원	1인당 과표	1인당 근로소득	세율	근소 공계	근소세액 공계	감세 혜택
면세점이하	0~5,700	424	0	3,887	0.00	0	0	0
면세점이하	5,700~15,235	4685	0	10,557	0.00	7,501	0	437
0~395	15,235~15,700	255	195	15,465	0.09	9,570	8	869
395~5,556	15,700~21,771	3218	2,808	18,539	0.09	10,031	114	1,272
5,556~10,000	21,771~27,000	763	7,673	24,263	0.09	10,889	282	2,033
10,000~11,019	27,000~28,199	275	10,526	27,619	0.18	11,393	373	2,424
11,019~12,550	28,199~30,000	219	11,780	29,094	0.18	11,614	400	2,491
12,550~26,050	30,000~45,000	1316	18,456	36,562	0.18	12,406	400	2,633
26,050~26,715	45,000~45,700	13	26,416	45,386	0.18	13,269	400	2,788
26,715~40,000	45,700~59,684	257	30,643	49,835	0.18	13,492	400	3,201
40,000~64,715	59,684~85,700	103	51,174	71,446	0.27	14,572	400	4,334
64,715~80,000	85,700~101,790	7	67,494	88,625	0.27	15,431	400	4,830
80,000~	101,790~	21	158,940	184,884	0.36	20,244	400	7,688
평 균				19,085				1,219

[그림 IV-13] 각 공제제도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IV.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127

<표 IV-21>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	1인당 근로소득	감세 혜택	dw/w	가격효과			1-한계 세율	가격효과 영향	가처분 소득변화
				대체효과	소득효과	소계			
면세점이하	3,887	0	0.0	0.0	0.0	0.0	0.825	0.0	0.0
면세점이하	10,557	437	12.25	387.9	-87.4	300.5	0.825	247.8	685.0
0~395	15,465	869	7.35	341.0	-173.8	167.1	0.789	131.8	1,001.0
395~5,556	18,539	1,272	22.33	1,242.1	-254.4	987.7	0.789	779.1	2,051.1
5,556~10,000	24,263	2,033	20.24	1,473.2	-406.6	1,066.6	0.775	826.9	2,859.8
10,000~11,019	27,619	2,424	12.56	1,040.9	-484.8	556.0	0.726	403.6	2,827.7
11,019~12,550	29,094	2,491	4.19	365.5	-498.1	-132.6	0.672	-89.1	2,401.4
12,550~26,050	36,562	2,633	2.79	306.2	-526.6	-220.4	0.663	-146.1	2,487.0
26,050~26,715	45,386	2,788	1.40	190.0	-557.7	-367.6	0.654	-240.4	2,548.1
26,715~40,000	49,835	3,201	17.84	2,667.8	-640.1	2,027.7	0.654	1,325.7	4,526.3
40,000~64,715	71,446	4,334	2.43	521.5	-866.9	-345.3	0.568	-196.3	4,138.2
64,715~80,000	88,625	4,830	22.27	5,920.4	-965.9	4,954.5	0.568	2,815.6	7,645.2
80,000~	184,884	7,688	3.87	2,148.0	-1,537.6	610.4	0.483	294.7	7,982.6
	19,085	1,219							1,615.3

<표 IV-22>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	1인당 근로소득	감세혜택	가격효과	정부수입 변화	공제액변화	예산비용	가처분 소득변화
면세점이하	3,887	0	0.0	0.0	0.0	0.0	0.0
면세점이하	10,557	437	300.5	52.6	27.0	411.6	685.0
0~395	15,465	869	167.1	44.3	9.0	833.9	1,001.0
395~5,556	18,539	1,272	987.7	261.9	142.2	1,152.4	2,051.1
5,556~10,000	24,263	2,033	1,066.6	282.9	139.2	1,889.2	2,859.8
10,000~11,019	27,619	2,424	556.0	197.5	45.0	2,271.7	2,827.7
11,019~12,550	29,094	2,491	-132.6	-47.1	-3.6	2,534.1	2,401.4
12,550~26,050	36,562	2,633	-220.4	-78.3	-6.0	2,705.5	2,487.0
26,050~26,715	45,386	2,788	-367.6	-130.6	-9.9	2,909.1	2,548.1
26,715~40,000	49,835	3,201	2,027.7	720.2	200.7	2,681.2	4,526.3
40,000~64,715	71,446	4,334	-345.3	-153.7	-4.7	4,483.5	4,138.2
64,715~80,000	88,625	4,830	4,954.5	2205.7	512.8	3,136.6	7,645.2
80,000~	184,884	7,688	610.4	326.7	11.0	7,372.2	7,982.6
	19,085	1,219				1,159.0	1,615.3

<표 IV-23>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의 종합적 비용과 편익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	1인당 근로소득	예산비용	대체효과	초과부담	편익	예산1원당 편익
면세점이하	3,887	0.0	0.0	0.0	0.0	0.00
면세점이하	10,557	411.6	387.9	-68.0	479.5	1.17
0~395	15,465	833.9	341.0	-81.2	915.1	1.10
395~5,556	18,539	1,152.4	1,242.1	-295.9	1,448.2	1.26
5,556~10,000	24,263	1,889.2	1,473.2	-360.8	2,250.1	1.19
10,000~11,019	27,619	2,271.7	1,040.9	-327.6	2,599.2	1.14
11,019~12,550	29,094	2,534.1	365.5	-124.9	2,658.9	1.05
12,550~26,050	36,562	2,705.5	306.2	-106.0	2,811.5	1.04
26,050~26,715	45,386	2,909.1	190.0	-66.6	2,975.8	1.02
26,715~40,000	49,835	2,681.2	2,667.8	-935.6	3,616.7	1.35
40,000~64,715	71,446	4,483.5	521.5	-228.7	4,712.2	1.05
64,715~80,000	88,625	3,136.6	5,920.4	-2,595.8	5,732.4	1.83
80,000~	184,884	7,372.2	2,148.0	-1,130.3	8,502.5	1.15
	19,085	1,159.0			1,343.4	1.16

두 가지 공제제도로 인한 정부 예산비용은 평균 115.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세혜택의 변화와 같이 대체로 소득증가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공제제도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평균 134.3만원으로 나타나 예산 1원당 편익은 1.16원으로 개별제도의 편익 1.15원(근로소득공제), 1.31원(근로소득세액공제) 사이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행제도에 따른 근로소득구간별 부담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총 세수 6,860십억원으로 실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7,146십억원), 징수액(7,677십억원)의 96.0%, 89.4%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세 부담가구의 평균적 규모가 4인 이하이기 때문이다.

<표 IV-24> 소득세 부담구조

(단위: 천원, 천명, %)

근로소득구간	1인당 근로소득	1인당 소득세	실효세율	세수(십억원)
0~5,700	3,887	0	0.00	0
5,700~15,235	10,557	0	0.00	0
15,235~15,700	15,465	10	0.06	2
15,700~21,771	18,539	139	0.75	447
21,771~27,000	24,263	408	1.68	311
27,000~28,199	27,619	621	2.25	171
28,199~30,000	29,094	820	2.82	179
30,000~45,000	36,562	2,022	5.53	2,662
45,000~45,700	45,386	3,455	7.61	44
45,700~59,684	49,835	4,216	8.46	1,082
59,684~85,700	71,446	8,917	12.48	915
85,700~101,790	88,625	13,323	15.03	98
101,790~	184,884	45,118	24.40	947
합 계				6,860

주: 4인 가족 기준

V. 공제제도 개편방안

1. 개편방안

이상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는 외국의 세제와 비교하여 높은 근로소득 공제로 인해 1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필요경비적 고려는 미약하여 4인가구와 1인가구의 실효세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실효세율 구조도 중위소득 수준에서 타 소득층보다 다소 높은 실효세율증가율을 보이는 문제점도 있었다. 각 제도별 경제적 효과측면에서는 예산비용 대비 편익의 관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도가 근로소득공제제도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두 공제제도의 규모차이를 배제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재분배효과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근로소득세제의 개편에서 면세소득 수준의 하향조정과 함께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필요경비적 고려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근로소득공제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양 공제제도의 역할에 대해 기존의 연구³²⁾들은 제도 도입목적에 근로자의 필요경비 공제이므로 두 제도를 근로소득공제제도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경감의 목적이 있으나 최종소득규모 차이에 의

32) 세제발전심의회(1985), 소득과세제도연구분과위원회(1985),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1988)가 있다. 김근중(1997)에서 재인용.

한 과세리는 소득세부과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제도로의 통합은 김근중(1997)이 지적하였듯이 양 제도의 조세경감효과가 유사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확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근로소득 2천만원 내외의 계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효과와 공제한도 확대에 의한 수직적 공평성의 문제³³⁾는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효세율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수직적 공평성에 대한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제제도 개편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두 가지 개편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근로소득 세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의 근로소득 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역할을 조정하고 가구원수에 따른 부담구조조정을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시나리오이다. 동 시나리오는 현재 제도의 틀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이 용이하고 이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의 제도와는 별개로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과도한 복지제도 의존성을 낮추어 주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동 제도가 갖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³⁴⁾.

33) 김근중(1997)

34) EITC제도 도입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설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EITC제도의 적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나 제도도입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저소득층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표 V-1> 정책 시나리오의 구성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근로소득공제	축소	폐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EITC 제도로 개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폐지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존 제도의 개선(시나리오 A)

구체적으로 기존 제도의 개선은 1) 근로소득공제 중 전액공제 한도를 현재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현재의 공제한도(40만원)와 공제율변화 기준금액(50만원)을 두 배인 8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3)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 이하일 때 적용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안이다.

시나리오 A에 따르면 전체적인 근로소득세 세수는 현행제도의 98.5%(6,759십억원/6,860십억원)로 세수감소 규모는 약 1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실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00% 소득공제되는 소득한도가 줄어들어 따라 저소득층³⁵⁾의 실효세율은 0.3%포인트 정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연소득 3천만원 내외의 근로자에게는 제도개편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다. 연소득 3천만원 이상 수준의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확대효과가 소득공제 축소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게 되며 그 효과

35) 제도변화에 따라 근로소득 5,700~15,235천원 구간에 속한 사람 중 13,364천원 이상 소득자는 소득세부담이 존재하나 중간소득인 14,300천원인 경우 소득세 부담률이 0.18%(2.5만원)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분석의 편의상 생략하였다.

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축소된다. 이러한 제도개편의 영향은 연소득 약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실효세율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시나리오 A의 소득세 부담변화

(단위: 천원,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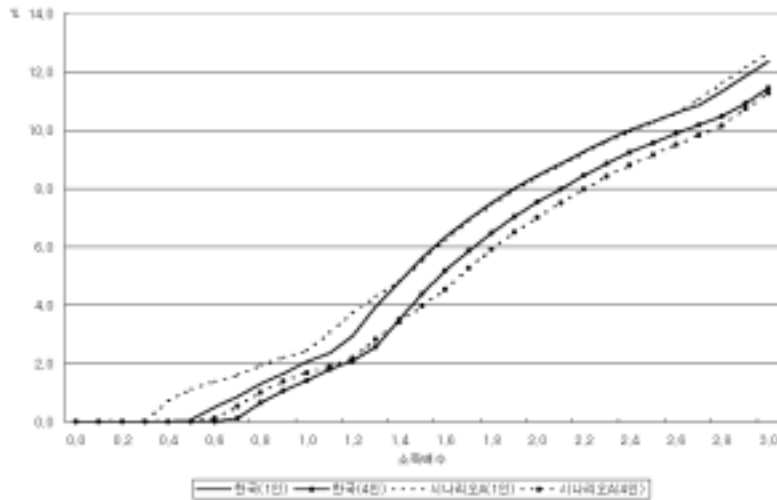
근로소득구간	1인당 근로소득	1인당 소득세	실효세율	실효세율변화 (%p)	총 세수 (십억원)
0~5,700	3,887	0	0.00	0.00	0
5,700~15,235	10,557	0	0.00	0.00	0
15,235~15,700	15,465	64	0.41	0.35	16
15,700~21,771	18,539	193	1.04	0.29	623
21,771~27,000	24,263	434	1.79	0.11	331
27,000~28,199	27,619	685	2.48	0.23	188
28,199~30,000	29,094	843	2.90	0.08	184
30,000~45,000	36,562	1,820	4.98	-0.55	2,396
45,000~45,700	45,386	3,253	7.17	-0.45	41
45,700~59,684	49,835	4,014	8.05	-0.41	1,030
59,684~85,700	71,446	8,814	12.34	-0.14	905
85,700~101,790	88,625	13,220	14.92	-0.12	97
101,790~	184,884	45,114	24.40	0.00	947
합 계					6,759

주: 4인 가족 기준

한편 소득세부담의 국제비교에서 나타난 가구규모에 따른 부담구조의 문제점은 시나리오 A에서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은 생산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기존의 40~50% 수준에서 20~30%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져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4인가구의 면세소득수준 차이도 현재의 제도보다 넓어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인가구의 면세소득수준이 현재보다도 낮아져 동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한편 중간소

득계층에서 나타나는 실효세율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 시나리오 A의 소득세 부담구조



나. EITC제도의 도입(시나리오 B)

시나리오 B는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제도를 EITC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EITC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증가에 따라 정부지원이 증가하는 점증구간, 정부지원이 변하지 않는 고원구간, 감소하는 점감구간의 설계가 중요하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제도구성을 미국제도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과 유사하도록 설계하였다. 2002년 우리나라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99만원으로 EITC제도가 도입되면 연소득 712.8만원까지는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를 받게 된다. 또한 소득이 83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보조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연소득 2,138.4만원에서는 보조금이 없어지게 된다.

<표 V-3> EITC제도 도입 시나리오(B)

		미국(1999)		시나리오 B	
		무 자녀	2 자녀	무 자녀	2 자녀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	점증한도 소득	0.697	0.565	0.7	0.6
	점감시작 소득	0.872	0.737	0.9	0.7
	적용대상 한도	1.569	1.810	1.6	1.8
세 율	점증구간	0.0765	0.40	0.0765	0.40
	점감구간	0.0765	0.2106	0.0765	0.2106

<표 V-4> 시나리오 B의 소득세 부담변화

(단위 : 천원, 천명, %)

근로소득구간	1인당 근로소득	1인당 소득세	실효세율	실효세율변화 (%p)	총 세수 (십억원)
0~5,700	3,887	-1,555	-40.00	-40.00	-660
5,700~15,235	10,557	-1,925	-18.23	-18.23	-9,018
15,235~15,700	15,465	-412	-2.67	-2.73	-105
15,700~21,771	18,539	790	4.26	3.51	2,544
21,771~27,000	24,263	2,441	10.06	8.38	1,862
27,000~28,199	27,619	3,045	11.03	8.78	837
28,199~30,000	29,094	3,311	11.38	8.56	724
30,000~45,000	36,562	4,655	12.73	7.20	6,128
45,000~45,700	45,386	6,243	13.76	6.14	79
45,700~59,684	49,835	7,416	14.88	6.42	1,904
59,684~85,700	71,446	13,251	18.55	6.07	1,360
85,700~101,790	88,625	18,153	20.48	5.45	133
101,790~	184,884	52,806	28.56	4.16	1,109
합 계					6,896

주: 4인 가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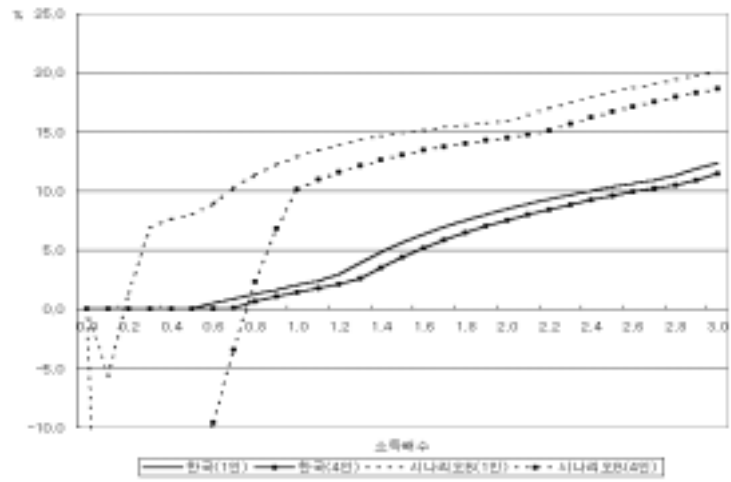
시나리오 B에 따르면 총 근로소득세수는 현행제도의 100.5%인 6,896십억원으로 거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10조원에 가까운 저소득층 지원금을 고려하면 소득세 납부계층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1,5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음의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수준을 넘어감에 따라 실효세율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폭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나 3.5~8.8%에 이른다. 특히 소득 2,177만~3천만원 계층의 실효세율은 현재의 1.68~2.82%에서 4~6배 이상 증가한 10.0~11.4%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높은 면세점(1인가구),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세제적 고려 미비, 그리고 중간소득 이상의 계층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실효세율 증가라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EITC제도로의 개편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에 대한 면세소득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평균근로자 소득의 20% 이하로 낮아진 반면 4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은 소폭 증가하여 가구규모에 따른 고려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가구원수 증가에 대한 세제적 고려는 필요경비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일정소득(생산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의 구간에서 크게 나타나며 소득이 동 수준을 초과하면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구규모에 따른 실효세율변화 패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구조로 판단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조세지원(Tax credits)의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수준보장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 인센티브의 강화는 전체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규모증가 → 재정지원 소요 증가 → 세수감소를 초래해 시나리오 B의 재정수입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새로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저소득자의 일부는 기존 사회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층일 수 있어 EITC제도로 인한 세수감소가 사회보장지출의 대체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 실제 세수감소 규모는 나타난 결과보다 작을 것이다.

[그림 V-2] 시나리오 B의 소득세 부담구조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는 근로자와 과표 양성화율이 낮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특유의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등을 운영하여 왔다. 또한 동 공제제도들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담의 누진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한도 및 공제율 체계의 설정은 면세자의 증가 등 다른 문제점 또한 야기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별 소득세 부담구조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요 공제제도인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노동시장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제비교와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수가 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세목간의 상대적 역할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근로소득세 제도측면에서는 면세점 수준, 누진구조, 가구원 수에 따른 필요경비 고려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저생계비와 비교한 면세 소득수준은 1인가구의 경우 2.83배로 4인가구의 1.28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줘 가구규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국가와의 비교분석에서도 1인가구의 면세 소득수준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평균생산직 근로자소득의 2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나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은 평균소득의

40~50%로 설정되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다. 반면 4인가구의 면세소득은 평균소득의 60~70% 수준으로 미국·영국의 80~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가구규모 증가에 따른 세제적인 고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근로소득세제 개편이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실효평균세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특히 저소득계층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구의 필요경비 측면의 고려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평균세율의 누진구조도 우리나라는 생산근로자 평균임금의 1.3~2.3배 수준의 중간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는 제도운동을 위한 정부예산 1원당 편익은 1.15원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1.31원보다 낮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예산 1원당 편익은 1.16원으로 두 제도 값 사이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가 근로소득공제제도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소득층보호와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는 1인가구의 면세소득수준을 높여 과세기반을 약화시키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두 공제제도의 확대는 넓은 세원을 지향하는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목적인 중하위소득자의 보호측면에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세제 측면의 고려는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공제제도 확대보다는 음의 소득세와 같은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미 면세 혹은 낮은 실효세율이 적

용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간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실효세율 증가는 기존 공제제도의 구간 및 공제율의 종합적인 조정 등을 통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제제도의 공제율 누진도가 중간소득계층에서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구간 혹은 누진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전체적인 공제제도의 개편방향과 함께 각 공제제도의 역할정립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대표적인 두 공제제도의 효과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소득공제제도보다 비용대비 편익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세액공제 혹은 이와 유사한 EITC제도의 도입 및 역할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세수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공제제도를 소폭 변화시킨 시나리오 A의 소득수준별 실효세율의 변화는 전액 소득공제되는 소득한도가 줄어들어 따라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은 소폭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45%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의 적용범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연소득 3천만원 내외의 근로자에게는 제도개편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다. 연소득 3천만원 이상 수준의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확대 효과가 소득공제 축소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게 되며 그 효과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축소된다. 이러한 제도개편의 영향은 연소득 약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실효세율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규모에 따른 부담구조의 문제점은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은 생산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기존의 40~50% 수준에서 20~30%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져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4인가구의 면세소득수준 차이도 현재의 제도보다 넓어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인가구의 면세소득수준이 현재보다도 낮아져 동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중간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실효세율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제도를 EITC제도로 개편하는 시나리오 B에 따르면 1,5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음의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동소득수준을 넘어감에 따라 실효세율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폭은 중상위 소득계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 2,177만~3천만원 계층의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4~6배 이상 증가한 10.0~11.4%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1인가구의 높은 면세소득 수준,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세제적 고려 미비, 그리고 중간소득 이상의 계층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실효세율 증가라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EITC제도로의 개편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에 대한 면세소득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평균근로자 소득의 20% 이하로 낮아진 반면 4인가구의 면세소득 수준은 소폭 증가하여 가구규모에 따른 고려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가구원수 증가에 대한 세제적 고려는 필요경비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일정소득(생산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의 구간에서 크게 나타나며 소득이 동 수준을 초과하면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구규모에 따른 실효세율변화 패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구조로 판단된다. 한편 근로소득세수는 현행제도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으나 상당한 저소득층 지원금을 고려하면 소득세 부담구조는 중상위근로자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참 고 문 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 _____, 『소득세법해설』, 1999.
- _____, 『국세청 30년사』, 1996.
- 김근중,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 『재정논집』, 제12집 제2호, 1997.
- 배준호, 『소득세』, 『한국 조세정책50년』 제1권,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성명재·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손광락,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재정논집』, 제14집 제1호, 1999.
- 안종범·송재창, 『저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재분배 효과와 재정수요를 중심으로』, 『한국재정』, 2000.
- 영화조세통람사, 『2003조세편람』, 2003.
- 원윤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 『재정논집』, 제15집 제2호, 2001.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 전영준·김재진,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용역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1.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세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88 세제개편 방안』, 1988.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통계 국제비교』, 2003.
- _____,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 2003.

- 石 弘光, 『税金の論理』, 講談社現代新書1229, 講談社, 1994
- 稲垣光隆, 『図説 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02
- 井堀利宏, 『要説: 日本の財政・税制』, 税務経理協会, 2002
- 内閣府政策統括官(編), 『政策効果分析レポート2002』, 2003
- 根岸毅宏, 『アメリカのEITC(勤労所得税額控除) と所得保障政策』, 『國學院経済學』第47巻 第1号, 1999
- Atkinson, A. and J. Stiglitz,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McGraw-Hill, 1980
- Bakija, Jon and Eugene Steuerle, “Individual Income Taxation Since 1948,” *National Tax Journal*, Vol. 44, No. 4, 1991
- Browning, Edgar. K., “Effect of EITC on Income and Welfare,” *National Tax Journal*, Vol. 48, No. 1, 1995.
- Blundell, R. and H. Hoynes, “Has “In-Work” Benefit Reform Helped the Labour Market?,” *NBER Working Paper 8546*, 2001
- Blundell, R. and H. Reed,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IFS Briefing Note No. 6*, 2000
- Brewer, M. and P. Gregg, “Lone Parents, th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and Employment in Households with Children,” in R. Dickens, J. Wadsworth and P. Gregg, *The State of Working Britain*,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1
- Dickert, S., S. Hauser and J.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ransfer Programs: A Study of Labor Market and Program Participation,” in J. Poterba(eds),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9, MIT Press, 1995
- Dilnot, A. and J. McCrae, “Family Credit and the Working

- Families' Tax Credit," IFS Briefing Note 3/99, IFS (reprinted in *OECD Economic Studies* No. 31, 2000), 1999
- Eissa, N. and H. Hoyn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NBER Working Paper* 6856, 1988
- GAO, "Federal Taxes: Information on Payroll Taxes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Noncompliance," *U. S.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1
- Greenstein, R. and I. Shapiro, *New Research Findings on the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1998
- IRS(a), "Compliance Estimates for Earned Income Tax Credit Claimed on 1999 Returns," *U. S. Department of Treasury*, Feb, 2002.
- ___(b),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Program Effectiveness and Program Management FY 1998~2002," *U. S. Department of Treasury*, Feb, 2002.
- Johnson, N., *A Hand Up: How Stated Earned Income Tax Credits Help Working Families Escape Poverty in 2001*,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report, 2001
- Liebman, J.,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entives and Income Distribution," in J. Poterba(eds),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1, MIT Press, 1998
- OECD, *Taxing Wages 2001-2002*, 2002.
- Pearson M. and S. Scarpetta, "An Overview: What Do We Know about Policies to Make Work Pay?," *OECD Economic Studies*, No. 31., 2000
- Scholz, J., "In-Work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e Economic Journal*, Vol. 106,
Jan., 1996

Ventry, Dennis J., "The Collision of Tax and Welfare Politics: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1969-1999," *National Tax Journal*, Vol. 53, No. 4, 2000

<부표 6>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천명, %)

과표구간	1인당 근로소득	인원	감세혜택	가격효과	정부수입 변화	근소공제 변화	예산비용	가처분 소득변화
면세점 이하	3,887	424	0	0.0	0.0	0.0	0.0	0.0
면세점 이하	10,557	4,685	437	300.5	52.6	27.0	411.6	685.0
0~395	15,465	255	861	-87.0	-23.1	-1.2	883.2	796.2
395~10,000	20,604	3,981	1,372	717.8	190.3	74.3	1,256.1	1,909.3
10,000~12,550	28,388	493	2,072	-57.8	-20.5	-1.6	2,090.8	2,033.0
12,550~26,050	36,562	1,316	2,233	-140.4	-49.9	-2.5	2,280.5	2,140.0
26,050~26,715	45,386	13	2,389	-287.7	-102.2	-2.6	2,488.4	2,200.7
26,715~40,000	49,835	256	2,801	2,107.7	748.6	208.7	2,260.7	4,178.6
40,000~64,715	71,446	103	3,934	-265.3	-118.1	-3.6	4,049.0	3,783.6
64,715~80,000	88,625	7	4,430	5,034.5	2,241.3	521.1	2,709.3	7,290.7
80,000~	184,884	21	7,288	690.4	369.5	12.4	6,930.8	7,621.2
평 균	19,424		1,128				1,071.4	1,430.9

<부표 7>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비용과 편익

(단위: 천원, 천명, %)

과표구간	1인당 근로소득	인원	예산비용	대체효과	초과부담	편익	예산1원당 편익(원)
면세점 이하	3,887	424	0.0	0.0	0.0	0.0	0.00
면세점 이하	10,557	4,685	411.6	387.9	-68.0	479.5	1.17
0~395	15,465	255	883.2	85.2	-22.0	905.2	1.02
395~10,000	20,604	3,981	1,256.1	992.2	-256.4	1,512.5	1.20
10,000~12,550	28,388	493	2,090.8	356.6	-121.9	2,212.6	1.06
12,550~26,050	36,562	1,316	2,280.5	306.2	-106.0	2,386.5	1.05
26,050~26,715	45,386	13	2,488.4	190.0	-66.6	2,555.1	1.03
26,715~40,000	49,835	256	2,260.7	2,667.8	-935.6	3,196.2	1.41
40,000~64,715	71,446	103	4,049.0	521.5	-228.7	4,277.6	1.06
64,715~80,000	88,625	7	2,709.3	5,920.4	-2,595.8	5,305.1	1.96
80,000~	184,884	21	6,930.8	2,148.0	-1,130.3	8,061.1	1.16
평 균	19,424		1,071.4			1,231.6	1.15

<부표 10>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정부의 예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	1인당 근로소득	감세혜택	가격효과	정부수입 변화	공제액변화	예산비용	가처분 소득변화
면세점이하	3,887	0	0.0	0.0	0.0	0.0	0.0
면세점이하	10,557	437	300.5	52.6	27.0	411.6	685.0
0~395	15,465	869	167.1	44.3	9.0	833.9	1,001.0
395~5,556	18,539	1,272	987.7	261.9	142.2	1,152.4	2,051.1
5,556~10,000	24,263	2,033	1,066.6	282.9	139.2	1,889.2	2,859.8
10,000~11,019	27,619	2,424	556.0	197.5	45.0	2,271.7	2,827.7
11,019~12,550	29,094	2,491	-132.6	-47.1	-3.6	2,534.1	2,401.4
12,550~26,050	36,562	2,633	-220.4	-78.3	-6.0	2,705.5	2,487.0
26,050~26,715	45,386	2,788	-367.6	-130.6	-9.9	2,909.1	2,548.1
26,715~40,000	49,835	3,201	2,027.7	720.2	200.7	2,681.2	4,526.3
40,000~64,715	71,446	4,334	-345.3	-153.7	-4.7	4,483.5	4,138.2
64,715~80,000	88,625	4,830	4,954.5	2205.7	512.8	3,136.6	7,645.2
80,000~	184,884	7,688	610.4	326.7	11.0	7,372.2	7,982.6
	19,085	1,219				1,159.0	1,615.3

<부표 11>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의 종합적 비용과 편익

(단위: 천원, 천명, %)

과세표준	1인당 근로소득	예산비용	대체효과	초과부담	편익	예산1원당 편익
면세점이하	3,887	0.0	0.0	0.0	0.0	0.00
면세점이하	10,557	411.6	387.9	-68.0	479.5	1.17
0~395	15,465	833.9	341.0	-81.2	915.1	1.10
395~5,556	18,539	1,152.4	1,242.1	-295.9	1,448.2	1.26
5,556~10,000	24,263	1,889.2	1,473.2	-360.8	2,250.1	1.19
10,000~11,019	27,619	2,271.7	1,040.9	-327.6	2,599.2	1.14
11,019~12,550	29,094	2,534.1	365.5	-124.9	2,658.9	1.05
12,550~26,050	36,562	2,705.5	306.2	-106.0	2,811.5	1.04
26,050~26,715	45,386	2,909.1	190.0	-66.6	2,975.8	1.02
26,715~40,000	49,835	2,681.2	2,667.8	-935.6	3,616.7	1.35
40,000~64,715	71,446	4,483.5	521.5	-228.7	4,712.2	1.05
64,715~80,000	88,625	3,136.6	5,920.4	-2595.8	5,732.4	1.83
80,000~	184,884	7,372.2	2,148.0	-1130.3	8,502.5	1.15
	19,085	1,159.0			1,343.4	1.16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전병목 · 원종학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현황과 주요 선진국들과의 부담구조 비교분석을 통해 현 제도를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근로소득 관련 공제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편방안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제도는 면세점 수준, 누진구조, 가구원 수에 따른 필요경비 고려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면세점 수준은 1인가구가 4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실효세율의 차이도 선진국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근로소득공제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고려한 근로소득세 개편방안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공제제도 조정을 통한 세제개편은 면세점을 낮추어 세원을 확충하고 세제의 가구원 수 고려에 효과가 있었으나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소폭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EITC제도 도입은 세제의 가구원 수 고려, 저소득자들의 기초생활보장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한 실효세율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소득세제의 개편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

는 근로소득공제의 확대를 지양하고 정책목표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구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공제 수준의 현실화와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EITC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다.

Reform of Income Tax Allowances and Tax Credits

Byung Mok Jeon · Weon Jong Hak

This study analyzes income tax burden of employees and compares structure of effective tax rates of 4 countries(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This gives us useful implications on Korean income tax system. For the tax reform, we als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two major income allowances, employment income deduction, tax credits for wage and salary income earners. The analysis suggests that Korean income tax system is needed to improve equity that is continuously deteriorate due to increase of minimum taxable income level. And the economic analysis reveals that tax credits for wage and salary workers is superior to general employment income deduction. The results imply that Minimum taxable income of single household is required to set well below of current 50% level of average production worker's income and actual cost of living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of minimum taxable income of bigger household(4 persons). For the actual reform, we propose no further expansion of employment income deduction for efficiency and equity. Two scenarios that reflect the policy suggestions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rade-offs between broadening of tax base and tax burden of low-income earners, supporting low-income earners and tax burden of actual income tax payers.

<著者略歴>

田 炳 睦

서울대학교 資源工學科 卒業
美國 Rice大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元 鍾 鶴

延世대학교 經濟學科 卒業
日本 一橋大學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研究報告書 03-03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2003年 12月 26日 印刷
2003年 12月 31日 發行

著 者 田炳睦・元鍾鶴
發行人 宋大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18-7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番地
電話: 2186-2114(代), 팩시밀리: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一 志 社

印刷 韓國租稅研究院 2003

ICRNT 89-8101-246-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